

제2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제2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순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
-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운영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4. 4. 5. ~ 4. 11.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4월 11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melang418@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경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4144호
----------	--------

발의연월일: 2024. 3. 27.

장경원 의원, 양동진 의원
유승현 의원, 김미연 의원
이복남 의원, 정홍준 의원
오행숙 의원, 김태훈 의원
신정란 의원, 김영진 의원
정광현 의원

발의자:

1. 개정이유

-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순천 SOS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순천 SOS 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3. 개정안: 별첨

4. 관련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1조

5. 예산상황: 불임2

【붙임 1】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순천 SOS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긴급복지에서 제외된 위기상황 발생 가구에 대해 민관이 협력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는 순천 SO S(Save Our Suncheon citizen)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순천 SOS 사업의 지원대상은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한다.

③ 순천 SOS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돌발위기가정 지원(긴급생계비 및 긴급의료비)
2. 생활불편해소, 물품·생계지원, 정서·심리 지원을 위한 후원 연계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지원대상 소득 및 재산기준, 지원금액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순천 SOS 사업비 지원이 불가하며, 최근 1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대상자 또한 같은 항목으로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경우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조(순천 SOS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긴급복지에서 제외된 위기 상황 발생 가구에 대해 민관이 협력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는 순천 SOS(Save Our Suncheon citizen)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 <u>② 순천 SOS 사업의 지원대상은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한다.</u> <u>③ 순천 SOS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u> <u>1. 돌발위기가정 지원(긴급생계비 및 긴급의료비)</u> <u>2. 생활불편해소, 물품·생계지원, 정서·심리 지원을 위한 후원 연계</u> <u>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u>④ 지원대상 소득 및 재산기준, 지원금액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 <u>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순천 SOS 사업비 지원이 불가하며, 최근 1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같은 항목으로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u>
<u>제5조(시행규칙) (생략)</u>	<u>제6조(시행규칙) (현행 제5조와 같음)</u>

【붙임 2】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5조(순천 SOS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순천 SOS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긴급복지에서 제외된 위기상황 발생 가구에 대해 민관이 협력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는 순천 SOS(Save Our Suncheon citizen)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순천 SOS 사업의 지원대상은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한다.

③ 순천 SOS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돌발위기가정 지원(긴급생계비 및 긴급의료비)
2. 생활불편해소, 물품·생계지원, 정서·심리 지원을 위한 후원 연계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지원대상 소득 및 재산기준, 지원금액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긴급복지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의 위기발생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생계비 및 긴급의료비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총 비용(a-b)	110,000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세입(a)	-	-	-	-	-	-
세출(b)	110,000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110,000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국 비	-	-	-	-	-	-
도 비	-	-	-	-	-	-
시 비	110,000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소요예산: 110,000천원 / 연 22,000천원

○ 산출기초(재정소요액 분석)

■ 5년간 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SOS센터운영) 현황

- 2024년: 500,000원*44세대 / 22,000천원
- 2025년: 500,000원*44세대 / 22,000천원
- 2026년: 500,000원*44세대 / 22,000천원
- 2027년: 500,000원*44세대 / 22,000천원
- 2028년: 500,000원*44세대 / 22,000천원

6. 협의사항: 해당 없음

7. 부대의견: 해당 없음

8. 작성자: 순천시의회 의원 장경원

9. 협조자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749-6180)
 희망복지팀장 정미자(☎ 749-6230)
 담당자 서경미(☎ 749-6234)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

나. 상담·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각각 한도로 한다. <개정 2012. 10. 22., 2015. 12. 29.>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

원을 하는 경우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시설의 입소기준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기간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담당기구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상담·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
여 담당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② 삭제 <2012. 10. 22.>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
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하여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
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
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
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
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참고 2

기존 조례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 정) 2006.11.15. 조례 제894호

(일괄개정) 2009.01.09. 조례 제1066호

(일부개정) 2020.05.13. 조례 제212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3항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5.13.>

제2조(지원대상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시설·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시시설을 이용하는 자
3.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과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 유공자
6.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7.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8.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 또는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
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모·부자 가정<개정 2009.01.09>
10.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보호 아동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의 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 등 행사 참여자
12. 실직, 사고, 사업실패, 질병, 수해, 화재,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개정 2020.5.13.>
13.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중 사고를 당한 자에 대해 지원 또는 위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14.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급식관련 경비 지원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문화 체육 활동 경비 지원
4. 명절 위문금품 지원
5. 월동비 지원
6. 긴급 구호비 지원
7. 국경일, 보훈의날, 장애인의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8. 노인복지시설 생활 및 이용자에게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설날 및 추석 등에 필요한 위문금품 지원
9. 재해 또는 사고 위로비

② 제2조 제11호의 행사참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념품 제공 등 행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읍·면·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이 결정한다.

②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 배분된 경우 그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단체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⑥ 제3조 제1항 제1호의 대상자는 순천교육청교육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 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894호, 2006.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6호, 2009.01.0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25호, 202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승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4152호
----------	--------

발의연월일: 2024. 4. 4.

발의자: 유승현 의원, 양동진 의원
이세은 의원, 최현아 의원
정광현 의원, 이복남 의원
장경순 의원, 장경원 의원
김태훈 의원, 박계수 의원
김영진 의원, 이영란 의원

1. 제정이유

-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비용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포상에 관한 사항(제9조)

3. 제정안: 별첨

4. 관련법령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5. 예산상황: 붙임 2

【붙임 1】

순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등 및 그 보호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예방·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대책
3.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방안 및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아동등에 대한 수색지원
2. 실종아동등에 대한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지원
3. 실종아동등에 대한 예방 교육 및 홍보
4. 실종아동등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5. 실종아동등 발생 시 조기 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및 홍보
6.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비용 지원)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순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해당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5. 작성자: 순천시의회 의원 유승현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실종아동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약칭: 자살예방법)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순번	법령명	시행일자	부서
1	강원특별자치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6. 11.	
2	경상남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	2022. 4. 14.	보육정책과
3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2022. 11. 3.	
4	대전광역시 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4. 6.	아동복지과
5	부산광역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0. 11.	아동청소년과
6	부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2. 7.	아동보육과
7	서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2021. 12. 10.	여성가족과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6. 29.	아동청소년과
9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2. 30.	아동담당관
10	인천광역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2. 30.	
11	전라남도 실종자 조기 발견 지원 조례	2021. 12. 23.	여성가족정책관
12	제주특별자치도 실종자 조기 발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0. 4. 13.	복지정책과
13	창원시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2023. 9. 27.	아동청소년과
14	충청북도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2021. 8. 6.	

참고 3

관련 참고 자료[순천경찰서]

☐ 순천 실종자 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월
접수	456건	391건	310건	43건
해제	446건	378건	300건	38건

☐ 2023년 순천 실종자 분석

구분	가출인	아동 (18세미만)	치매환자	장애 (지적·자폐·정신)
접수	164건	94건	35건	17건
해제	155건	93건	35건	17건

순천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세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4153호
----------	--------

발의연월일 : 2024. 4. 4.

이세은 의원, 이복남 의원

발의자 : 유승현 의원, 김영진 의원

정광현 의원, 양동진 의원

1. 제정이유

- 마약, 알코올, 인터넷, 도박 등 주요 중독을 조기에 발견·예방하고 중독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및 치료 지원을 통해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 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 다. 예방사업 및 치료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 라.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0조)
- 마.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제정안: 붙임 1

4. 관련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 보호법」,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5. 예산상황: 붙임 2(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1】

순천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민에게 각종 유해한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말한다.
2. “마약”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3.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4. “인터넷”이란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5. “중독”이란 유해약물,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을 오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6. “청년”이란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중독으로부터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중독 예방과 치료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독 예방과 치료지원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독 예방과 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중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중독 예방과 치료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중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예방사업) 시장은 시민의 중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구축
2. 중독의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중독예방 및 상담 사업
3. 중독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예방 교육사업
4. 청년 특화 중독의 예방 홍보 사업
5. 예방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중독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치료지원사업) 시장은 중독자와 중독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지 지원사업
2. 중독자의 사례관리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중독질환자 퇴원명령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및 사례관리
4. 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자조 모임 활성화 사업
5. 중독자 가족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중독 치료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서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에 일부 혹은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수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중독관리 및 치료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민간단체 등의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시장은 시민의 중독의 폐해에 대하여 일반 시민과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사업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순천시 마약 등 주요 중독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한다.

1.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마약 등 주요 중독의 예방 및 치료과 관련된 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

한 사항

3. 그 밖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기능과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순천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5. 작성자: 순천시의회 의원 이세은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마약류관리법)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③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도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1. 6. 7.>

④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2020. 12. 29.>

⑤ 삭제 <2002. 1. 19.>

⑥ 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시흥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1. 26.	건강도시과
2	강릉시 마약류 및 유해악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12. 27.	질병예방과
3	강진군 마약류 및 유해악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7. 27.	보건소
4	거제시 마약류 및 유해악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4. 3. 7.	감염관리과
5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6. 18.	보건의료과, 정신건강과
6	경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4. 3. 22.	식품의약과
7	경상북도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7. 13.	
8	경주시 마약류 및 유해악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	2023. 10. 4.	보건행정과
9	고성군 마약류 및 유해악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11. 10.	보건소 보건행정과
10	과천시 마약류 및 유해악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4. 3. 22.	보건소 질병관리과
11	광명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12. 28.	보건정책과
12	광주광역시 광산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11. 13.	보건행정과
13	광주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유해악물 오남용 예방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2023. 8. 4.	보건행정과
14	광주광역시 동구 마약류 및 유해악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11. 24.	건강정책과
15	광주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12. 24.	치매정신건강과
16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악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7. 15.	의약관리팀
17	구리시 마약류 및 유해악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11. 20.	보건정책과
18	군산시 마약류 및 유해악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12. 15.	건강관리과
19	군포시 마약류 및 유해악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2. 12.	보건행정과
20	김천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2023. 9. 27.	보건행정과
21	김포시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	2024. 2. 28.	보건행정과
22	김해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9. 21.	지역보건과(정신 보건팀)
23	나주시 마약류 및 유해악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2023. 4. 10.	감염병관리과
24	남동구 마약류 및 유해악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2022. 12. 22.	보건행정과
25	논산시 마약류 및 유해악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12. 20.	보건소(보건행정 과)

26	당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4. 3. 29.	질병관리과
27	대구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11. 10.	보건행정과
28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2023. 2. 21.	보건행정과
29	대구광역시 마약류·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0. 5.	보건의료정책관
30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9. 20.	보건행정과
31	대구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12. 20.	보건과
32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4. 2. 16.	보건행정과
33	대전광역시 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9. 27.	질병관리과
34	대전광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	2023. 10. 6.	
35	대전광역시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4. 3. 22.	
36	대전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7. 12.	보건행정과
37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7. 14.	예방의학과
38	대전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8. 16.	건강증진과
39	무안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5. 30.	보건행정과 의약팀
40	밀양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10. 6.	보건위생과
41	부산광역시 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12. 22.	보건소 보건행정과
42	부산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2023. 8. 16.	보건위생과
43	부안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10. 13.	보건소 보건행정과
44	서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7. 31.	보건행정과
45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4. 3. 8.	의약과 약무팀
46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9. 20.	보건의료과
47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	2023. 2. 24.	의약과
48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11. 15.	의약과
49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4. 20.	의약과
50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9. 20.	보건의료과 의약무팀
51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8. 3.	의약과
52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2. 11. 14.	의약과

53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5. 18.	의약과
54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4. 2. 22.	의약과
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8. 10.	의약과
56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2023. 7. 3.	보건의약과
57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2023. 12. 29.	보건의료정책과
5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2024. 3. 6.	의약과
59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	2023. 6. 27.	의료지원과
60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5. 11.	보건의료과
61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9. 14.	의약과
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2023. 7. 13.	의약과
6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2022. 12. 22.	의약과
64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11. 10.	보건의료과
65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	2023. 8. 3.	보건의료과 의약팀
66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12. 22.	약무팀
67	서울특별시 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12. 27.	의약과
68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10. 5.	의약과
69	서천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8. 10.	보건행정과
70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	2023. 8. 7.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71	성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10. 4.	보건소
72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10. 4.	보건소
73	속초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3. 17.	보건위생정책과
74	아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9. 15.	보건행정과
75	안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12. 29.	상록수보건소 보건정책과
76	안양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2024. 2. 20.	만안건강증진과
77	양산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	2023. 9. 7.	보건행정과(의약 팀), 건강증진과(정신 건강팀)
78	양양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4. 2. 27.	보건정책과
79	여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10. 31.	보건행정과

80	연천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4. 2. 29.	보건사업과
81	옥천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4. 3. 8.	보건소 보건행정과
82	완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12. 21.	건강증진과 의약관리
83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	2022. 12. 29.	식의약안전과
84	원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 조례	2023. 7. 14.	보건행정과
85	의왕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7. 31.	보건행정과
86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12. 29.	보건관리과
87	이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8. 14.	보건위생과
88	익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2024. 2. 7.	보건사업과
89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4. 2. 23.	보건행정과
90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6. 8.	
91	인천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12. 18.	치매정신과
92	인천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9. 27.	보건행정과
93	임실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4. 2. 16.	의료지원과
94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2023. 2. 28.	식품의약과
95	전북특별자치도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	2023. 12. 8.	보건의료과
96	전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12. 26.	마음치유센터
97	정읍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8. 9.	보건위생과
98	제주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2021. 4. 14.	보건위생과
99	제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4. 1. 12.	의약관리팀
100	진천군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	2023. 6. 26.	보건행정과
101	창원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11. 15.	보건정책과(노한 슬), 건강관리과(배선 민)
102	청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6. 9.	보건정책과
103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2. 29.	
104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2. 12. 30.	
105	파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4. 4. 2.	건강증진과

106	평택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10. 24.	보건사업과
107	포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9. 27.	감염병관리과
108	하남시 마약류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9. 27.	보건정책과
109	함평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9. 27.	보건소 보건행정과
110	강원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2023. 12. 29.	
111	홍성군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024. 3. 11.	의약
112	구미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2. 30.	구미보건소
113	대전광역시 동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13. 11. 8.	건강생활지원과
114	제주특별자치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5. 13.	건강관리과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154호
----------	--------

○ 제출자: 순천시장
○ 제출일: 2024. 4. 4.

1. 개정이유

- '22, '23 행정사무감사 개선 요구(개최 실적 없는 위원회 정비 검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위원회 구성이 명시되어 있고, 긴급·비상시에 민관협력 필요성이 있어 폐지보다는 비상설화 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4조) 운영
 - 현행: 협력위원회의 활동 범위(평상시, 재난 발생시로 구분)
 - 변경: 협력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안 제6조) 위원의 임기
 - 삭제
- (안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 삭제

3. 개 정 안: 별첨

4. 관련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

5.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4. 2. 29. ~ 3. 20.) 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4. 2. 28.(가족복지과-6305호)
- 예산부서 심의필: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2024. 2. 28.(예산실-2543호)
- 법제부서 공고필: 2024. 2. 29.(순천시 공고 제2024-573호)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운영) 협력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4조(운영) 협력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u> <u>1. 평상시: 민간단체와 재난안전 점검 전문가 위주로 안전문화운동 등 생활안전 시민실천운동 강화 및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u> <u>2. 재난 발생시: 재난수습·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의 재난대응 지원 활동 전개</u>	<u>제4조(운영) 협력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u>
<u>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u>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u>② 위촉직 위원</u>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u>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u> <u>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삭 제>
<u>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u>은 <u>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u> <u>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삭 제>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
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155호
----------	--------

○ 제출자: 순천시장
○ 제출일: 2024. 4. 4.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안 제1조, 제4조, 제6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 (조문정비) 계약심의위원 자격요건, 해촉사유 등 법령기준 일원화
- (안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 정비
 - 계약심의위원회 심사수당과 관계전문가의 기술검토수당 구분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개 정 안: 별첨

4.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4. 1. 24. ~ 2. 13.) 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4. 1. 19.(가족복지과-2226호)
- 예산부서 심의필: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2024. 1. 18.(예산실-779호)
- 법제부서 공고필: 2024. 1. 24.(순천시 공고 제2024-227호)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제3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사업 이외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당연직: 행정안전국장, 맑은물관리센터소장

2. 위촉직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바.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순천시 재무관(읍면동장 제외)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0조(심의요청 등)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계약담당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의안건으로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경우에는 회의 안건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열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 기간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문 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한다.

제14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장·포장 공사
2. 배수로 설치 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 공사
4. 보안등 공사
5. 보도블록 설치 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제15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 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2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제15조 관련)

구	분	금 액(원)	비 고
계약심의위원회	수 당	100,000	
	여 비	민 간: 5급 상당 공무원: 해당 직급	「공무원 여비 규정」
	교 통 비	민 간: 5급 상당 공무원: 해당 직급	
관계 전문가	기술 검토, 자 문 비	200,000	
주민참여감독자	수 당	20,000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안 제15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 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4.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

5. 작성자(참여자)

○ 행정안전국	회계과	과장	최광수(☎ 5471)
		계약1팀장	정용범(☎ 5679)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② (생략)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156호
----------	--------

○ 제출자: 순천시장

○ 제출일: 2024. 4. 4.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 관련 조례 정비 및 현행 규정 운영상 미비점 보완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안 제29조) 물품 납품 검사 시 입회자에 대한 재량 부여
 - (현행) 입회한다 → (개정) 필요 시 입회할 수 있다
- (안 별표 1) 소모품 기준 일부 제외
 - 조합 완성품(파티션 등) 휴대용 개인지급품 제외

3. 개 정 안: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現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상동)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행정안전부, 2022)

5.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4. 2. 15. ~ 2024. 3. 7.) 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4. 1. 31.(가족복지과-3332호)
- 예산부서 심의필: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2024. 1. 30.(예산실-1270호)
- 법제부서 공고필: 2024. 2. 15.(순천시 공고 제2024-381호)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를 “필요한 경우 회계
관계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 품종구분 기준 (2)소모품 중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생략)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u>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u> .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필요한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다.</u> ----- ----- -----.
[별표1] 물품의 종류, 상태구분 ○ 물품의 종류 (1)·(2) (생략) ○ 품종구분 기준 (1) (생략) (2) 소모품 ① ~ ④ (생략) <u>⑤ 여러 개의 부분품을 조합·완성하는 것으로서 전체를 1개의 단일물품으로 관리가 곤란한 물품(예: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 등)</u> <u>⑥ 진압장비, 의류, 핸드폰(휴대용으로서 개인에게 지급되어 관리되고 있는 물품) 등(단, 무기 및 탄약류는 제외)</u>	[별표1] 물품의 종류, 상태구분 ○ 물품의 종류 (1)·(2) (현행과 같음) ○ 품종구분 기준 (1) (현행과 같음) (2) 소모품 ① ~ ④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참고

관련 법령

1

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 2020. 5. 1. 제123조 전부 삭제>

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별지 제89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②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89호 서식 내지 별지 제91호 서식)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국·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장 계 약

제121조 삭제

제121조의1 삭제

제122조 삭제

제123조 삭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다. 소모품과 비소모품의 관리

1) 소모품

○ 소모품의 정의

-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사용 일용품 등과 같이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
-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소모품의 종류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 다른 물품을 수립·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 단,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21-41호)의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어 있는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관리 (예: 휴대전화기 등)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169호
----------	--------

○ 제출자: 순천시장

○ 제출일: 2024. 4. 4.

1. 개정이유

- 「2024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지침 개정으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금 지급 금액 상향(1,000천원 → 1,200천원)

2. 주요내용

- (안 제2조 제3호 신설) “정부지침” 정의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
- (안 제4조 제1항 변경) 출산지원금 지급금액
 - (기존) 신생아 1인당 1,000,000원을 지원
 - (변경) 정부지침에 따른 출산지원금을 지급

3. 개 정 안: 별첨

4.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제9조

5.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4. 2. 29. ~ 3. 20.) 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4. 2. 20.(가족복지과-5401호)
- 예산부서 심의필: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2024. 2. 23.(예산실-2350호)
- 법제부서 공고필: 2024. 2. 27.(순천시 공고 제2024-554호)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부지침”이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신생아 1인당 1,000,000원을 지원”을 “정부지침에 따른 출산지원금을 지급”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2.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u>뜻은 다음과 같다.</u> ----- 1. 2. (현행과 같음) 3. <u>“정부지침”이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u>
제4조(지원액)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한 여성 장애인에게 <u>신생아 1인당 1,000,000원을 지원</u>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조(지원액) ① ----- ----- <u>정부지침에 따른 출산지원금을 지급</u>-----. ②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4조

- (변경전)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한 여성장애인에게 신생아 1인당 1,000,000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 (변경후)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한 여성장애인에게 정부지침에 따른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4.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

5. 작성자(참여자)

○ 시민복지국 가족복지과 과장 박형숙(☎ 6170)
 장애인복지팀장 차송미(☎ 6267)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 ⑧ (생략)

참 고

2024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지침

주요 변경 내용 비교표

구분		2023년	2024년
공통사항	-	• 사업기간, 기준 시점, 원스톱서비스 등 : '23년 기준	• 사업기간, 기준 시점, 원스톱서비스 등 : '24년 기준
4. 지원내용	91	• (지원금액) 100만원	• (지원금액) <u>120만원*</u> * '24년 출산부터 적용
5. 신청방법	92	• (신청접수기관)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신청접수기관)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u>민간신청기관*</u> * 민간신청기관 12개소('23년 12월 기준) 불임3 참고
붙임3	102	• <신설>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민간신청기관 안내('23년 12월 기준) (표 생략)

4 지원내용

● (지원금액)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 2024년 출산부터 적용

●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채무불이행자, 치매,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최현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4128호
----------	--------

발의연월일: 2024. 2. 19.

최현아 의원, 이복남 의원

이향기 의원, 양동진 의원

서선란 의원, 최병배 의원

발 의 자: 유승현 의원, 박계수 의원

김영진 의원, 정광현 의원

강형구 의원, 나안수 의원

우성원 의원, 장경원 의원

1. 제정이유

-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기본계획 및 세부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반려동물 친화공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제정안: 별첨

4. 관련법령: 해당없음

5. 예산상황: 붙임 2

【붙임 1】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이란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동반여행 인프라 구축 및 유관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세부사업) 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
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관련 축제
3.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4. 반려동물 입장가능 표시증 설치
5.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 지원
6. 관광지 연계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 운영
7. 반려동물용품 자판기 설치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반려동물 친화공원) 시장은 반려동물과 그 반려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공원을 선정하여 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산업 육성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단체·기관 등을 선정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5. 작성자: 순천시의회 의원 최현아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illegible]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161호
----------	--------

○ 제출자: 순천시장

○ 제출일: 2024. 4. 4.

1. 개정이유

- 2023정원박람회 이후 신성장 산업 동력 확보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대규모 투자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주요내용

- (안 제5조) 인센티브 지원 범위 확대
 - 지원 대상 확대(제조업 →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기업)
 - 입지·시설·고용 및 관광숙박시설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
 - 대규모 투자·지방균형발전 특구 지원 인센티브 신설
- (안 별표) 인센티브 지원 대상 확대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 확대

3. 개 정 안: 별첨

4. 관련법령: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4. 2. 29. ~ 2024. 3. 20.) 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4. 3. 5.(가족복지과-1841호)
- 예산부서 심의필: 2024. 2. 20.(신성정산업과-1461호)
- 규제개혁 심의필: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2024. 2. 28.(예산실-2547호)
- 법제부서 공고필: 2024. 2. 29.(순천시 공고 제2024-1547호)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제조업”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50% 범위 안에서”를 “50퍼센트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업과 대고객 서비스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을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0억원까지”를 “50억 원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규채용”을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이고, 신규채용”으로, “범위안에서 6개월간 기업당 5억 원까지 지원”을 “범위에서 12개월간 기업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4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를 “50억 원까지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지매입비의 1/3범위에서 사업비”를 “3분의 1 범위에서 사업비(토지구입비, 건축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억원”을 “50억 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⑫ 시장은 지역경제 및 고용 활성화에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 인력 200명 이상의 국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제5조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50억 원까지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⑬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 고시 또는 지정된 규제 특례 특구 등에 본사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경우, 투자 비용 500억 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 인력 200명 이상 국내기업 또는 투자 비용 20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력 100명 이상의 본사이전 기업에 대해 제5조제1항 및 제5항에도 불

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100억 원까지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은 입지·시설·고용보조금 또는 본사이전에 따른 정주 지원비로 한다.

별표 기타 산업의 적용산업내용란에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매장면적의 합계가 2만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략)	제2조(정의) ----- -----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현행과 같음)
제5조(투자에 대한 지원) ① (생략)	제5조(투자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3조의 조건을 갖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 및 비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 ----- ----- -----.
1. <u>제조업</u> 이 입주할 경우 입지보조금으로 정상적인 토지 매입가의 <u>50% 범위 안에서</u> 50억까지 지원	1. <u>외국인 투자기업</u> 이 입주할 경우 입지보조금으로 정상적인 토지 매입가의 <u>50퍼센트 범위에서</u> --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제3조의 조건을 갖춘 국내자본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u>제조업과 대고객 서비스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u> 해당하는 사	⑤ ----- ----- <u>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u> -----

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 및 비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시설보조금은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공장시설을 신·증설 또는 수선하거나 시로 이전하는 경우에 최대 10억원까지 지원

2. 고용보조금은 신규채용 상시고용 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범위안에서 6개월간 기업당 5억원까지 지원(이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이내에 신규고용 한 경우도 해당된다)

3. 4. (생략)

5. 입지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 하거나 시로 이전하는 경우에 산업단지 분양가 또는 매입가의 30퍼센트 범위 내 최대 4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⑥ (삭제)

⑦ (생략)

⑧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춘 관광숙박시설 사업자에게 보

-----.

1. -----

----- 50억 원까지
--

2. -----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이고, 신규채용 상시고용 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범위에서 12개월간 기업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

3. 4. (현행과 같음)

5. -----

50억 원까지 지원

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⑧ -----
----- 3분의

지매입비의 1/3범위에서 사업비
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는 최대 20억원으
로 한다.

1. ~ 3. (생략)

⑨ ~ ⑪ (생략)

<신설>

<신설>

1 범위에서 사업비(토지구입비,
건축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는 최대 50
억 원----.

1. ~ 3. (현행과 같음)

⑨ ~ ⑪ (현행과 같음)

⑫ 시장은 지역경제 및 고용 활
성화에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 금액이 500억 원 이
상이고 상시 고용 인력 200명 이
상의 국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
하여 제5조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50억
원까지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⑬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 고시 또는 지정된 규제 특
례 특구 등에 본사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경우, 투자 비용 500억
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 인력 200
명 이상 국내기업 또는 투자 비
용 20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력 100명 이상의 본사이전 기

업에 대해 제5조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100억 원까지 특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은 입지·시설·고용보조금 또는 본사이전에 따른 정주지원비로 한다.

[별표]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제3조제2항 관련)

산업명	적용 산업 내용	비고
제조산업	○ (생략)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외국인투자관련 교육·보건 서비스업		
연구소 연구개발산업		
대고객 서비스사업		
국내투자 관련 교육·보건 서비스업		
지식정보 문화산업		
바이오산업		
4차산업		
정보통신업		
기타 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고시된 산업분류기준 - 동식물원(90231), 박물관(90221), 도서관(90211) - 골프장시설산업(91121): 골프장(규모 18홀 이상 시설) <신설>	
기타	○ (생략)	

[별표]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제3조제2항 관련)

산업명	적용 산업 내용	비고
제조산업	○ (현행과 같음)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외국인투자관련 교육·보건 서비스업		
연구소 연구개발산업		
대고객 서비스사업		
국내투자 관련 교육·보건 서비스업		
지식정보 문화산업		
바이오산업		
4차산업		
정보통신업		
기타 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고시된 산업분류기준 - 동식물원(90231), 박물관(90221), 도서관(90211) - 골프장시설산업(91121): 골프장(규모 18홀 이상 시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매장면적의 합계가 2만제곱미터 이상인 점포	
기타	○ (현행과 같음)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및 규제 특례를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투자 촉진
- 「전라남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3조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 미래성장가능성이 높고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가 큰 기업에 대해 특별 지원
 - 투자건당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최고 100억원
-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5조제5항 투자지원
 - 시장은 제3조의 조건을 갖춘 국내자본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조업과 대고객 서비스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 및 비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1 ~ 2023 투자유치 보조금 평균 집행액: 5,500백만원
- 2024년 이후 호텔, 복합쇼핑몰 등 대형 투자 유치 계획: 2개 기업 이상
 - 호텔, 복합쇼핑몰 등: 각 투자금액 2,000억원 이상, 300명이상 고용 예상
-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 지원 비율: 국비 65%, 지방비 45%
- 전라남도 투자유치 대규모 투자 재정자금 지원 비율: 도비 50%. 시비 50%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총 비용(a-b)	-38,500	-9,700	-7,000	-8,920	-6,940	-5,940
세입(a)	0	0	0	0	0	0
세출(b)	38,500	9,700	7,000	8,920	6,940	5,940

※ 세입은 발생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

4. 재원조달 방안

○ 연도별 재원조달 방안

(단위: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38,500	9,700	7,000	8,920	6,940	5,940
국 비	16,420	5,500	2,000	3,920	3,000	2,000
도 비	10,000	1,000	2,500	2,500	2,000	2,000
시 비	12,080	3,200	2,500	2,500	1,940	1,940

○ 투자유치 기금 운영 계획

- 설치년도: 2007 ~ 2024
- 조 성 액: 30,580백만원 / • 現 기금액: 10,254백만원
- 설치근거: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5조
- 조성방안: 투자유치 예상액 110%를 추경 및 본예산 편성 예정
 - 일반회계 전출(일반회계 · 국도비 보조금 → 기금)
 - 2024년 조성 예정액: 10,670백만원(2024년 예상액 + 10%)
 - 2024년 이후 조성 예정액: 31,680백만원

※ 참고) 2023년도 기금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지급 대상	보조금 지급액	비고
계	32	4,237.005	
입지보조금	3	870.08	도 348, 시 522
시설보조금	11	2,343.925	도 778, 시 2,265
지식정보문화	18	1,023	도 511, 시 511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산출기초 등)

구분	산출근거	금액
산단 입지 · 시설 보조금 및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 입지보조금 1,710백만원 × 5개년 • 시설보조금 2,850백만원 × 5개년 • 지식정보문화 1,140백만원 × 5개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 45% 지방비 55%	28,500백만원
대규모 투자 보조금(1개소)	• 투자금액 2,000억원, 상시고용인원 300명 기업 유치 시, 30% 내 최대 50억 지급 • 지급 시기 - 착공시 50% 지급, 완공 후 50% 지급 ※ 대규모 투자 지원 비율: 도비 50%, 시비 50%	5,000백만원
호텔 투자유치 보조금(1개소)	• 투자금액 2,000억원, 상시고용인원 300명 기업 유치 시, 1/3 범위 내 최대 50억 지급 • 지급 시기 - 착공시 50% 지급, 완공 후 50% 지급 ※ 대규모 투자 지원 비율: 도비 50%, 시비 50%	5,000백만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illegible]

참고

전남도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 개정(안)

□ 개정 이유

- 보조금 지원액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여 신성장원천, 첨단기술 보유기업 투자유치에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함

□ 지원대상 정비

- 지원대상: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중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공장 등 신·증설·이전 하는 기업
- 조건완화: 생물의학·바이오 연관 기업은 2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지원대상·지원비율 확대

- (입지보조) 국가산단, 일반산단,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부지매입비 30%한도 내, 최대 50억 원 지원
※ (당초) 부지매입비 30% 한도 내 최대 4억 원
- (시설보조) 20억 원 초과 투자액 10% 범위에서 최대 50억 원 지원
※ (당초) 20억 원 투자액의 5% 범위에서 최대 5억 원

□ 우대 지원 및 평가 조항 신설

- 첨단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보유기업과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은 입지·시설 보조금 10%p 가산 적용
 - 우대 비율 적용 시 입지보조금 최대 30%, 시설보조금 최대 20% 지원
- 타당성 평가 제도 신설
 - 사업실적(영업이익률, 신용등급 등), 투자실적(신규투자액, 신규고용인원) 등 평가 후 점수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4164호
----------	--------

○ 제출자: 순천시장
○ 제출일: 2024. 4. 4.

1. 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공포 2023. 5. 16., 시행 2024. 5. 17.)되고, 이와 연계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순천시 조례를 법률에 맞춰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문 변경
 - 기존 인용하던 법령 및 조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등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전라남도 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으로 변경
- (안 제2조~제8조, 제10조~제13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 및 그 밖의 용어 정비
- (안 제7조) 위원회 소관 간사 변경
 - 위원회 소관 간사: 문화예술과장⇒문화유산과장

3. 제 정 안: 별첨

4. 관련법령: 「국가유산기본법」 제1조, 제3조

5. 관련부서 의견: 의견 없음(의견청취: 2024. 3. 19. ~ 3. 20.)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 처리 규칙」 제14조제2호에 따른 입법예고 생략
→ 상위법령 또는 당해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4. 3. 19.(가족복지과-8673호)
- 예산부서 심의필: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2024. 3. 22.(예산실-3497호)
- 법제부서 공고필: 해당 없음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제2조(「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나목의 대상 시설물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조(「순천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를”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56조의4의 제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제4조(「순천시 순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순천시 순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4호 중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문화재보존관리비”를 “국가유산보존관리비”로 한다.

제26조제4항제2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7조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재보존관리비”를 “국가유산보존관리비”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보호구역내”를 각각 “국가유산 보호구역내”로 한다.

별표 3 제2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문화재명”을 “국가유산명”으로,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낙안읍성 확인사항의 검토서류란 중 “문화재보존관리비”를 “국가유산보존관리비”로 한다.

제5조(「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3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조(「순천시 문화재 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순천시 문화재 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 용역 사업이나 수리공사에 대한 평가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3. 국가·도문화유산위원회의 문화유산 위원 또는 문화유산 전문위원

제7조(「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로서”를 “국가유산으로서”로 한다.

1.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국가)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제4조제4항제2호 및 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유산과장”으로, “문화재업무”를 “국가유산업무”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8조(「순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문화재보호”를 “국가유산보호”로 한다.

제9조(「순천시 순천만습지 보전·관리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순천만습지 보전·관리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10조(「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개정)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전라남도 문화유산 보호 조례」”로,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문화재보호구역”을 “국가유산 보호구역”으로 한다.

제11조(「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재난관리 주관기관란 제17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2조(「순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순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3조(「순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② (생략) ③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 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 9. (생략) 10. 「 <u>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전승공 <u>예품</u> 11. ~ 13. (생략)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9. (현행과 같음) 10. 「 <u>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전승공 <u>예품</u> 11. ~ 13. (현행과 같음)

제2조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현행		개정안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제20조 관련)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제20조 관련)	
1. 검토대상 공공시설물 등		1. 검토대상 공공시설물 등	
가. 공공시설물	대중교통 시설물	가. 공공시설물	대중교통 시설물
	보행안전 시설물		보행안전 시설물
	편의시설물		편의시설물
	공급시설물		공급시설물
	녹지시설물		녹지시설물
	안내시설물		안내시설물
	임시시설물		임시시설물
나. 공공매체	정보매체	나. 공공매체	정보매체
	공공조형물		공공조형물
	공공용품		공공용품
다. 공공이미지		다. 공공이미지	
라.		라.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제3조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현행	개정안
제46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u>문화재를</u>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시설 이외에는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그 <u>문화재</u>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u>문화재청장</u>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제56조의4(전통사찰 및 <u>문화재</u> 건축물 등의 건폐율 완화) (생략) 1. (생략)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제46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u>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u>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시설 이외에는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그 <u>문화유산 및 자연유산</u>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u>국가유산청장</u>-----. ②·③ (현행과 같음) 제56조의4(전통사찰 및 <u>국가유산</u> 건축물 등의 건폐율 완화)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3. (생략)	<u>를」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 문화유산</u> 3. (현행과 같음)
---------	---

제4조 「순천시 순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사적 제302호로 지정된 순천 낙안읍성의 공개,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의 징수·사용, 전통 문화유산의 전승·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 ----- ----- -----.
제10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 3. (생략) 4. <u>문화재</u> 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생략)	제10조(관람의 금지) ----- ----- -----.
제13조(사용제한 등) ① (생략) 1. (생략) 2. <u>문화재</u> 보존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 7. (생략)	제13조(사용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국가유산</u> ----- ----- 3. ~ 7. (현행과 같음)
제23조(관람료 등의 사용) ① 관람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제23조(관람료 등의 사용) ① --- ----- -----.

현행	개정안
1. 낙안읍성 <u>문화재</u>의 보존관리를 위한 복원 또는 보수 2. <u>문화재</u> 보호구역안의 환경정화사업 3. <u>문화재</u>의 화재예방을 위한 사업 4. (생략) 5. <u>문화재</u> 보호구역안의 현상보존을 위한 경상경비 6.·7. (생략) 8. 낙안읍성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u>문화재보존관리비</u> 및 자녀학자금의 일부지원 9. ~ 14. (생략) ②·③ (생략) 제26조(구성) ① ~ ③ (생략)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략) 2. 순천시의회 의원, <u>문화재</u> 전문위원, 관련분야 교수 3. 낙안읍성 주민중 <u>문화재</u> 보존 및 전통문화에 관심이 있고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자 제2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낙안읍성 주요 <u>문화재</u> 복원에	1. ---- <u>국가유산</u> ----- ----- 2. <u>국가유산</u> ----- 3. <u>국가유산</u> ----- 4. (현행과 같음) 5. <u>국가유산</u> ----- ----- 6.·7. (현행과 같음) 8. ----- <u>국가유산보존관리비</u> ----- ----- 9. ~ 1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현행과 같음) 2. ----- <u>문화유산</u> -- ----- 3. ----- <u>국가유산</u> -- ----- ----- 제27조(기능) ----- -----. 1. ----- <u>국가유산</u> ---

현행	개정안
관한 사항 2. (생략) 3. 낙안읍성 주민에게 지급하는 <u>문화재보존관리비</u>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4. 5. (생략) 제31조(초가민박 지원) ① 낙안읍성 <u>문화재보호구역내</u>에서 본인 소유의 주택을 자신이 직접 초가민박이나 한옥 체험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전통민구 배치 등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주민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사업 신청일 현재 낙안읍성 <u>문화재보호구역내</u>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 규정이나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 민박사업자 또는 관광편의시설 사업자로 신고를 하고 낙안읍성 내에서 초가민박이나 한옥체험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 2. (현행과 같음) 3. ----- <u>국가유산보존관리비</u> ----- ----- 4. 5. (현행과 같음) 제31조(초가민박 지원) ① ----- - <u>국가유산 보호구역내</u>----- ----- ----- ----- ----- ----- ----- -----. ② ----- ----- <u>국가유산 보호구역내</u>----- ----- ----- -----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별표 3] 무료관람 대상자(조례 제9조) 1. ~ 23. (생략) 24. 낙안읍성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25. (생략) [별지 제1호서식] 관람권(개인)(조례 제6조) (앞면) <table><tr><td> 관람권 ○ 일련번호(적색) ○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구분(청색) ○ 관람요금(흑색) ○ 문화재명(흑색) </td><td> 낙안읍성의 천연색 사진 (문화재 포함) </td></tr></table> 210mm×70mm이내 (500g/m²) (뒷면) <table><tr><td> 유의사항 </td><td> 낙안읍성의 연혁 (문화재 포함) </td></tr></table>	관람권 ○ 일련번호(적색) ○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구분(청색) ○ 관람요금(흑색) ○ 문화재명(흑색)	낙안읍성의 천연색 사진 (문화재 포함)	유의사항	낙안읍성의 연혁 (문화재 포함)	[별표 3] 무료관람 대상자(조례 제9조) 1. ~ 23. (현행과 같음) 24. 낙안읍성 국가유산 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25.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관람권(개인)(조례 제6조) (앞면) <table><tr><td> 관람권 ○ 일련번호(적색) ○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구분(청색) ○ 관람요금(흑색) ○ 국가유산명(흑색) </td><td> 낙안읍성의 천연색 사진 (국가유산 포함) </td></tr></table> 210mm×70mm이내 (500g/m²) (뒷면) <table><tr><td> 유의사항 </td><td> 낙안읍성의 연혁 (국가유산 포함) </td></tr></table>	관람권 ○ 일련번호(적색) ○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구분(청색) ○ 관람요금(흑색) ○ 국가유산명(흑색)	낙안읍성의 천연색 사진 (국가유산 포함)	유의사항	낙안읍성의 연혁 (국가유산 포함)
관람권 ○ 일련번호(적색) ○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구분(청색) ○ 관람요금(흑색) ○ 문화재명(흑색)	낙안읍성의 천연색 사진 (문화재 포함)								
유의사항	낙안읍성의 연혁 (문화재 포함)								
관람권 ○ 일련번호(적색) ○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구분(청색) ○ 관람요금(흑색) ○ 국가유산명(흑색)	낙안읍성의 천연색 사진 (국가유산 포함)								
유의사항	낙안읍성의 연혁 (국가유산 포함)								

현행				개정안			
[별지 제3호서식]							
낙안읍성 초가 민박(한옥 체험업)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TEL: H.P:			
사업 신청 내용	사업비 (천원)	합계	보조금	자부담	비고		
사 업 개 요	민박명			신고번호			
	사업기간	시작일: 년 월 일		완료예정일: 년 월 일			
	대지면적	㎡	건축물 규모	☐ 1층 ☐ 2층 ☐ 지하			
	사업내용						
	주 택 연면적	㎡	전체방수 (면 적)	개 (㎡)	객실수 (면 적)	개 (㎡)	
	개보수면 적	㎡	전체방수 (면 적)	개 (㎡)	객실수 (면 적)	개 (㎡)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제31조에 따라 초가 민박(한옥 체험업)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낙안읍성 확인사항							
검 토 서 류		확 인 결 과		확인자 직 성명 (인)			
거주사실, 실거주확인		적합	부적합	업무담당자 공부확인			
<u>문화재보존관리비</u> 지급여부		적합	부적합	업무담당자 공부확인			
순천시장 귀하							

개정안							
[별지 제3호서식]							
낙안읍성 초가 민박(한옥 체험업)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TEL: H.P:			
사업 신청 내용	사업비 (천원)	합계	보조금	자부담	비고		
사 업 개 요	민박명			신고번호			
	사업기간	시작일: 년 월 일		완료예정일: 년 월 일			
	대지면적	㎡	건축물 규모	☐ 1층 ☐ 2층 ☐ 지하			
	사업내용						
	주 택 연면적	㎡	전체방수 (면 적)	개 (㎡)	객실수 (면 적)	개 (㎡)	
	개보수면 적	㎡	전체방수 (면 적)	개 (㎡)	객실수 (면 적)	개 (㎡)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제31조에 따라 초가 민박(한옥 체험업)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낙안읍성 확인사항							
검 토 서 류		확 인 결 과		확인자 직 성명 (인)			
거주사실, 실거주확인		적합	부적합	업무담당자 공부확인			
<u>국가유산보존관리비</u> 지급여부		적합	부적합	업무담당자 공부확인			
순천시장 귀하							

제5조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6조(문화예술 육성 업종) 제3조 제2항 제4호의 육성 및 지원 대상 문화예술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2. (생략) 13. <u>문화재</u> 매매업소 14. · 15. (생략) 제9조(위원회 설치) ①~③ (생략) ④ 위원은 순천시의회 의원 2명 및 <u>문화재</u>·환경조형·예술·건축·조경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업무관련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 ⑥ (생략)	제6조(문화예술 육성 업종) 제3조 제2항 제4호의 육성 및 지원 대상 문화예술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2. (현행과 같음) 13. <u>문화유산</u> ----- 14. · 15.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 설치)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u>국가유산</u>----- ----- ----- -----.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 「순천시 문화재 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순천시 <u>문화재</u> 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 <u>문화재</u> 보호 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순천시장(이하 "시장"	순천시 <u>국가유산</u> 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 ----- -----<u>국가유산</u>----- ----- -----. 제2조(기능) -----

현행	개정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요구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자문위원 중 해당분야의 전문가 3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u>문화재</u>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u>문화재</u>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2. <u>문화재</u> 수리 전,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계획(적정성, 보수범위 등)에 관한 사항 및 수리 중 또는 완공시 설계도서대로 시공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3. <u>문화재</u> 수리사업에 대한 명예 감독 4. <u>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9조</u> 규정에 의한 <u>문화재 수리 용역 사업이나 수리공사에 대한 평가</u> 5. <u>지정문화재</u>의 효율적인 보존	----- ----- ----- ----- ----- -----. 1. <u>국가유산</u>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u>국가유산</u> ----- ----- 2. <u>국가유산</u> ----- ----- ----- ----- ----- 3. <u>국가유산</u> ----- 4. 「<u>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국가유산 수리 용역 사업이나 수리공사에 대한 평가</u> 5. <u>지정(국가)유산</u> -----

현행	개정안
및 관리 등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6.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u>문화재</u>의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7. 관내 <u>문화재</u>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기타 <u>문화재</u>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2. (생략) 3. <u>국가·도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위원 또는 문화재 전문위원</u> 4.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그 <u>문화재와</u> 관련이 있는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5. <u>문화재</u>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생략)	----- ----- 6. ----- <u>국가유산</u> ----- 7. -- <u>국가유산</u> ----- ----- 8. -- <u>국가유산</u> ----- -----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2. (현행과 같음) 3. <u>국가·도문화유산위원회의 문화유산 위원 또는 문화유산 전문위원</u> 4. ----- ---- <u>국가유산과</u> ----- ----- 5. <u>국가유산</u>-----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본 조례에서 "향토유적"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u>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u> 2. 향후 <u>문화재로서</u>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제4조(위원회 설치) ①~③ (생략) ④ (생략) 1. (생략) 2. <u>문화재</u> 및 시정자료 업무 담당국장 3. <u>문화재</u> 및 향토유적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생략) ⑥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u>문화예술과장</u>이 되고 서기는 <u>문화재업무</u> 팀장이 된다. 제18조(기록작성보관) ① (생략) ② 시장은 <u>문화재</u>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조(정의) ----- -----. 1. 「<u>국가유산기본법</u>」에 따라 <u>국가유산</u>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국가)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 <u>국가유산으로서</u> ----- ----- 제4조(위원회 설치) ①~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국가유산</u> ----- 3. <u>국가유산</u> ----- ----- ⑤ (현행과 같음) ⑥ ----- ----- <u>문화유산과장</u>이 되고 서기는 <u>국가유산업무</u> ----- --. 제18조(기록작성보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u>국가유산</u> ----- ----- -----.

제8조 「순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u>문화재보호</u> ,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 ----- <u>국가유산보호</u> ----- ----- ----- ----- ----- -----.

제9조 「순천시 순천만습지 보전·관리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습지보전의 책무)①(생략) ② 시장은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습지보호지역 보전과 「 <u>문화재보호법</u> 」 제25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명승 제41호의 보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습지보전의 책무)①(현행과 같음) ② ----- ----- ---- 「 <u>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u> 」 제12조 ----- -----.

제10조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 <u>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u> 」에 따라 <u>문화재</u> 로 지정된 부동산과 <u>문화재보호구역</u>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① 「 <u>전라남도 문화유산 보호 조례</u> 」에 따라 <u>국가유산</u> 으로 지정된 부동산과 <u>국가유산 보호구역</u> ----- ----- ----- -----.

제11조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5조제2항 관련) <table><tr><th>재난관리 주관기관</th><th>재난 및 사고의 유형</th><th>주관부서</th></tr><tr><td>1. ~ 16.</td><td>(생략)</td><td>(생략)</td></tr><tr><td>17. <u>문화재청</u></td><td>가. <u>문화재</u> 시설 사고</td><td>문화유산과</td></tr><tr><td>18. ~ 20.</td><td>(생략)</td><td>(생략)</td></tr></table> 비고: (생략)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1. ~ 16.	(생략)	(생략)	17. <u>문화재청</u>	가. <u>문화재</u> 시설 사고	문화유산과	18. ~ 20.	(생략)	(생략)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5조제2항 관련) <table><tr><th>재난관리 주관기관</th><th>재난 및 사고의 유형</th><th>주관부서</th></tr><tr><td>1. ~ 16.</td><td>(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tr><td>17. <u>국가유산청</u></td><td>가. <u>국가유산</u> 시설 사고</td><td>문화유산과</td></tr><tr><td>18. ~ 20.</td><td>(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table> 비고: (현행과 같음)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1. ~ 1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7. <u>국가유산청</u>	가. <u>국가유산</u> 시설 사고	문화유산과	18. ~ 2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1. ~ 16.	(생략)	(생략)																							
17. <u>문화재청</u>	가. <u>문화재</u> 시설 사고	문화유산과																							
18. ~ 20.	(생략)	(생략)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1. ~ 1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7. <u>국가유산청</u>	가. <u>국가유산</u> 시설 사고	문화유산과																							
18. ~ 2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12조 「순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생략)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u>문화재</u> 등의 화재, 붕괴 5. ~ 8. (생략)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국가유산</u> ----- ----- 5. ~ 8. (현행과 같음)

제13조 「순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순천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 4. (생략)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u>문화재</u> 등의 위치표시 6. (생략)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u>국가유산</u> ----- 6.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4.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

5. 작성자(참여자)

○ 문화관광국 문화유산과 과장 황태주(☎ 3807)
문화재정책팀장 장현복(☎ 3808)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거래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165호
----------	--------

- 제출자: 순천시장
- 제출일: 2024. 4. 4.

1. 개정이유

- 상위법(관광진흥법)의 일부 법령 개정 및 신설에 따른 조례 정비
-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조례 통폐합
- 순천시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함으로써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 (안 제4조 ~ 제9조)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 (안 제10조) 관광객 유치,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진흥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 (안 제11조, 제12조) 순천시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13조)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
- (안 제14조 ~ 제17조) 관광안내소 운영 및 해설사 운영에 관한 사항
- (안 제18조) 관광홍보달력 제작 배부
-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 「순천시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
 - 「순천시 헬스투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3. 개 정 안: 별첨

4. 관련법령: 「관광진흥법」

5.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4. 1. 31. ~ 2024. 2. 20.) 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4. 2. 2.(가족복지과-3637호)

○ 예산부서 심의필: 2024. 1. 15.(관광과-1014호)

○ 규제개혁 심의필: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2024. 1. 30.(예산실-1250호)

○ 법제부서 공고필: 2024. 1. 31.(순천시 공고 제2024-286호)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관광진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관광을 목적으로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관광지를 방문하는 사람(순천시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관광특산품 등을 말한다.
3.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5. “숙박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소재 업소 등을 말한다.

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소

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한 숙박업소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자연휴양림

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수목원

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한 농어촌민박

6.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7.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일시적 취약계층 등 이동이나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에 대한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8.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이란 지역관광과 기업의 일·휴양연계제도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관광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 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광 관련 전문가, 기관·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관광통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관광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작성된 관광통계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순천시 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업무 추진을 위하여 순천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관광진흥계획에 대한 심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3. 각종 관광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4.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시 관광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가. 순천시의회 의원

나.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다. 관광 및 콘텐츠 개발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에 소속된 전문가
라.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법인·단체·기업·개인사업자 및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개발·홍보·판매 사업

2.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3.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4.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 사업

5. 숙박시설 개선 사업 등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7.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관광상품 및 서비스 발굴·육성 지원 사업

8. 그 밖에 관광객의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홍보기념품 또는 물품(지역사랑상품권 포함)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
 2. 시가 추진하는 행사 및 이벤트 등에 참여한 자
 3. 국내외 교류 업무에 따른 초청 외빈 등 관계자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치·종교 행사의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회의·축제에 참여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제11조(순천시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법 제48조의9에 따라 순천시 지역관광협의회(이하 “관광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광협의회에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관계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한다.

제12조(관광협의회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
 2. 법 제48조의9제5항에 따른 관광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① 시장은 에너지·자원의 사용을 최소화 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 훼손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

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차량을 이용한 숙박·취사 등의 행위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다만, 다른 법령에서 출입, 주차, 취사 및 야영 등을 금지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② 시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지할 때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시장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의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2. 관계 지역주민,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관리지역 조사위원회 운영
 3. 특별관리지역 개선사업
- ④ 시장은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편의시설 설치, 이용수칙 고지, 이용료 징수, 차량·관광객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또는 해제일시, 지정·변경·해제 사유,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등을 시의 공보에 고시하고,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관광안내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관광객에 대한 지역관광의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지역관광을 위한 편의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시장은 시 문화, 관광, 생태 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습지보전법」 제22조의3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으로 위촉된 사람
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5.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시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해진 평가에 합격한 후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

제16조(해설사 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사에 대한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 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관광객들이 언제든지 해설을 요청할 수 있게 주요 관광지에 해설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해설사는 시의 지원 요청(관광안내, 문화해설 등을 말한다)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시장은 해설사로 선발된 사람에게 순천시 해설자증을 발급해야 하고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해설사로서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17조(해설사 활동비 등 지원) 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관광 해설에 대한 활동비
2. 근무복 등 구입비
3. 근무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비
4. 상해보험료
5.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6. 그 밖에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해설사가 해설활동을 위해 관내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설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관광홍보달력 제작·배부) ① 시장은 시 관광 홍보를 위해 관광홍보달력(이하 “달력”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시설에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1.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및 언론사
2. 한국철도공사(기차역 포함) 및 한국관광공사
3. 한국관광협회 및 여행사협회 회원사
4.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광안내소
5. 시 관내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
6. 시 산하 단체, 마을회관 및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7. 시 관내 음식점·숙박업소, 대형마트, 버스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
8.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시설·단체 및 관련 업체

② 달력은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③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관광자원 사진 및 설명
2. 시 로고와 시정구호

3. 각종 축제 및 행사내용
4. 절기 등 전통민속과 음력, 흑두루미의 날 등 생태관광 홍보 관련 내용
5.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플랫폼 운영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 개최 및 팸투어 사업
 4. 국내외 관광 관련 홍보관 운영 및 박람회 운영
 5. 온·오프라인 관광마케팅
 6. 관광분야 종사원 교육 및 연수
 7. 순환관광버스 등 시티투어 및 관광택시, 관광약자 이동차량 운영
 8. 관광기념품 판매
 9. 관광사진 및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10.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업무
 11. 법 제48조의12에 따른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12.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③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① 시장은 관광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순천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순천시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
2. 「순천시 헬스투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3.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7조(위원회 구성)
- 안 제10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 안 제17조(해설사 활동비 등 지원)
- 안 제18조(관광홍보달력 제작·배부)
- 안 제19조(업무의 위탁)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 관광진흥위원회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과 여비 지급
- 해설사 운영에 따른 활동비, 근무복, 해설장비, 상해보험료 등 처우개선비
- 관광홍보달력 배부에 따른 제작비
- 시티투어 및 관광약자 이동차량 민간위탁금 및 운영비
- 관광택시 운행자 보상금 및 운영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6차년도 (2029년)
총 비용(a-b)	-6,927,370	-1,152,370	-1,155,000	-1,155,000	-1,155,000	-1,155,000	-1,155,000
세입(a)	0	0	0	0	0	0	0
세출(b)	6,927,370	1,152,370	1,155,000	1,155,000	1,155,000	1,155,000	1,155,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6차년도 (2029년)
합 계	6,927,370	1,152,370	1,155,000	1,155,000	1,155,000	1,155,000	1,155,000
자체수입	0	0	0	0	0	0	0
시 비	6,927,370	1,152,370	1,155,000	1,155,000	1,155,000	1,155,000	1,155,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152,370천원

○ 순천 관광진흥위원회 운영: 2,600천원

- 회의참석수당 : $100,000\text{원} \times 13\text{명} \times 2\text{회} = 2,600\text{천원}$

○ 해설사 활동비: 676,770천원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70,000\text{원} \times 40\text{명} \times 20\text{일} \times 12\text{월} = 665,920\text{천원}$
-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교육: $70,000\text{원} \times 31\text{명} \times 3\text{회} = 6,510\text{천원}$
-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 $70,000\text{원} \times 31\text{명} \times 2\text{회} = 4,340\text{천원}$

○ 관광홍보달력 제작: 22,000천원

○ 관광택시 운영: 123,000천원

- 관광택시 홍보물 등 제작: $2,800,000\text{원} \times 5\text{종} = 14,000\text{천원}$
- 관광택시 운행자 근무복 등 구입: $400,000\text{원} \times 15\text{명} \times 2\text{회} = 12,000\text{천원}$
- 관광택시 랩핑 보상비: $50,000\text{원} \times 15\text{명} \times 12\text{월} = 9,000\text{천원}$

○ 관광약자 이동차량 운영지원비: 88,000천원

○ 시티투어 민간위탁금: 240,000천원

6. 협의사항: 해당 없음

7. 부대의견: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 문화관광국 관광과	과장	양효정(☎ 5500)
	관광기획팀장	전선희(☎ 5788)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① (생략)

②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관리지역이 같은 시·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1.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차량을 이용한 숙박·취사 등의 행위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다만, 다른 법령에서 출입, 주차, 취사 및 야영 등을 금지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③ ~ ⑤ (생략)

⑥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편의시설 설치, 이용수칙 고지, 이용료 징수, 차량·관광객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 ⑨ (생략)

⑩ 그 밖에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①·② (생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생략)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①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생략)

제48조의12(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과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휴양연계관광산업(지역관광과 기업의 일·휴양연계제도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관광 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육성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공간, 체류비용의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순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4166호
----------	--------

○ 제출자: 순천시장
○ 제출일: 2024. 4. 4.

1. 제정이유

- 순천시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 관광과 소관 관광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 위한 조례 통폐합

2. 주요내용

- (안 제1조, 제2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규정 목적과 정의
- (안 제4조 ~ 제14조) 관광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대상시설, 이용시간, 이용료, 이용료의 감면·반환·이용의 제한 기준
 - 시설 관리위탁, 운영지원, 관리 운영사무의 위임
-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3. 제 정 안: 별첨

4. 관련법령: 「관광진흥법」 제67조

5.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4. 1. 31. ~ 2024. 2. 20.) 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4. 2. 2.(가족복지과-3652호)
- 예산부서 심의필: 2024. 1. 17.(관광과-1159호)
- 규제개혁 심의필: 해당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2024. 1. 30.(예산실-1269호)
- 법제부서 공고필: 2024. 1. 31.(순천시 공고 제2024-289호)

순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시설”이란 관광객 유치와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순천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관광시설물로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 등”이란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명칭 및 위치) 관광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운영시간 등) ① 관광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이 관광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별표 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이용료 등) ① 이용료 등은 별표 3과 같다.

②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광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료는 별표 4와 같다.

④ 시장은 이용자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받은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순천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통합입장권) 시장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순천 낙안읍성, 순천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순천시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별표 5와 같이 통합입장권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순천시민 1년 회원권) 시장은 순천시민의 관광복지를 위해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순천 낙안읍성, 순천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나무박물관에 대해서는 별표 6과 같이 순천시민 1년 회원권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입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 등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관광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이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시설물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시설 내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음식물을 반입·섭취하는 경우
3. 위험물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가진 경우
4.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관리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거나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관광시설의 운영관리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로부터 관광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관리·운영사무의 위임) 시장은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주암면장에게 위임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2.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3.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4.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관광진흥과 소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소별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기관
관광과	1.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및 순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주암면장

[별표 1]

관광시설의 명칭과 위치 (제4조 관련)

시설명	위 치	비고
순천 드라마촬영장	순천시 비례골길 242	
순천전통야생차체험관	순천시 선암사길 450-1	
정원위케이션	순천시 해룡면 생태배움길 123	
순천시 주암오토캠핑장	순천시 주암면 구산강변길 22	

[별표 2]

관광시설의 운영시간 (제5조 관련)

시설명	운영시간	휴무일
순천 드라마촬영장	09:00~18:00	
순천전통야생차체험관	09:00~18:00	1. 매주 월요일(다만, 1월 1일, 3·1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과 기독탄신일이 월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 설 및 추석의 연휴기간 2.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한 날
정원위케이션	00:00~24:00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	00:00~24:00	

[별표 3]

이용료 등 (제6조 관련)

1. 순천 드라마촬영장

○ 입장료

(단위: 원)

구 분	성 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개 인	3,000	2,000	1,000
단 체	2,500	1,500	800
순천시민	1,500	1,000	무료
1년권	20,000	10,000	5,000

<비 고>

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및 초등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및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유료 관람객을 말한다.
6. “1년권”이란 발행일로부터 1년간 드라마촬영장을 입장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 이용료

(단위: 원)

영 화	드라마 등 기타	비 고
2,000,000	800,000	1일 기준

※ 이용료 1일 기준은 00:00 ~ 24:00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2. 순천전통야생차체험관

○ 체험료 및 수강료

구 분		요 금	비 고
다례체험료		3,000원	1명 기준
차음식만들기체험료		5,000원(다례체험료 포함)	1명 기준
차예절 캠프 체험료	그날	10,000원	1명 기준 (15명 이상)
	1박2일	20,000원	1명 기준 (15명 이상)
한옥 명상 체험료	가족실	50,000원	3명 기준
	단체실	150,000원	10명 기준
	안 채	300,000원	6명 기준
관람		무료	

3. 정원위케이션

【개별요금】

(단위: 원)

구 분	요 금(원)				수용인원(명)		비고 (객실 규모)
	학 생		성 인		학생	성인	
	비수기의 평일	성수기/ 주말·공휴일	비수기의 평일	성수기/ 주말·공휴일			
에코1동	120,000	168,000	150,000	210,000	9	6	47.7㎡
에코2동	50,000	70,000	60,000	84,000	4	2	20.7㎡
	40,000	56,000	50,000	70,000	3	2	13.5㎡
에코3동	150,000	210,000	200,000	280,000	15	8	70.2㎡
에코4동	280,000	392,000	350,000	490,000	29	14	117㎡
다목적실식당 (시간당)	30,000	42,000	40,000	56,000	120		198㎡
생태관(시간당)	30,000	42,000	40,000	56,000	84		156㎡

【단체요금】

(단위: 원)

숙 박 비	초등학교(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대학교)	
	1박2일	2박3일	1박2일	2박3일	1박2일	2박3일
비수기의 평일	10,000	20,000	10,000	20,000	10,000	20,000
성수기/ 주말·공휴일	15,000	30,000	15,000	30,000	15,000	30,000

※ 단체 인솔자와 보호자는 개별요금에 준한다.

<비 고>

1. 기준 정원 초과 시 1명당 1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개별요금 이용자에 해당)
2. 숙박하지 않고 에코·생태관만 사용시 성인기준 성수기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성수기는 1년 중 “7월 15일에서 8월 31일까지” 를,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 주말·공휴일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고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5.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은 학생으로 본다.

4. 순천시 주암오토캠핑장

□ 이용료

(단위: 원)

시설별	사용 기준	성수기(7~8월)		비수기		비 고
		주 말 공휴일	평 일	주 말 공휴일	평 일	
오토캠핑장	1면	35,000	30,000	30,000	25,000	
텐트사이트	1면	35,000	30,000	30,000	25,000	
글램핑장	1개소	120,000	120,000	100,000	80,000	기준정원 : 4명
카라반	1개소	120,000	120,000	100,000	80,000	기준정원 : 4명

※ 부가가치세 포함

※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1. 1일 사용시간: 그날 14:00 ~ 다음 날 11:00
2. 퇴실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
 - 가.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5,000원
 - 나.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10,000원
 - 다. 4시간 초과: 1일 이용료
3. 위 시설 중 글램핑장 및 카라반의 경우, 기준정원 초과시 1명당(중학생 이상) 10,000원의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4. 전기 및 샤워장 등 그 밖의 이용료는 캠핑장 운영 규정에 따른다.

[별표 4]

주 차 료 (제6조제3항 관련)

(단위: 원)

관광용시설별	구 분	요 금	비 고
순천 드라마촬영장	소 형	1,000	11인승 미만, 2.5톤 이하 화물차
	중 형	2,000	11인승 ~ 24인승, 2.5톤 초과 5톤 이하 화물차
	대 형	3,000	25인승 이상 5톤 초과 화물차

<비 고>

1. 주차요금의 감경

가.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의 50퍼센트

2. 주차요금의 면제

가. 국빈과 그 수행원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록표를 부착한 차량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별표 5]

통 합 입 장 권(제7조 관련)

(단위: 원)

입장권 구분	구 분	성 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통합입장권	개 인	12,000	8,500	5,500
	단 체	9,000	7,000	4,000

※ 1박 2일간 관람 가능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순천 낙안읍성, 순천 드라마 촬영장,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순천시 자연휴양림)

<비 고>

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및 초등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및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유료 관람객을 말한다.

[별표 6]

순천시민 1년 회원권 요금(제8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성 인	청소년 및 군인	비 고
순천시민 1년 회원권	10,000	10,000	

※ “순천시민 1년 회원권”이란 순천시민이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순천 낙안읍성, 순천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을 말한다.

[별표 7]

이용료 등의 감면기준(제9조 관련)

☐ **감경**

○ **정원워케이션 이용료**

구 분	비 율
순천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숙박이용료의 30% ※ 시설이용료 면제
국가유공자, 1~3급 장애인, 국민기초수급대상자(청소년)	숙박이용료의 30%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숙박이용료의 30%

□ 면제

○ 순천 드라마촬영장 입장료, 통합입장권

1. 국민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외교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사람
4. 65세 이상인 내국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상 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나. 같은 법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가.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 나.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나. 의사자유족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다.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1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는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

14. 순천시에 주소를 둔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

1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16.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17.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

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19. 학생 교육 활동을 위해 단체 입장하는 경우 인솔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초·중·고 교원

20.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21.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22. 한복을 착용한 사람(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에 한한다)

23. 「관광진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로서 단체관광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사람

2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2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순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5. 작성자(참여자)

○ 문화관광국	관광과	양효정(☎ 5500)
	관광기획팀장	전선희(☎ 5788)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관광진흥법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관광지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환급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171호
----------	--------

○ 제출자: 순천시장
○ 제출일: 2024. 4. 4.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 정비
- 센터 운영시간 및 이용료 등에 관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2. 주요내용

- (안 제2조) 상위법 반영 조항 개정사항 정비
: “반려동물” 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
- (안 제3조) 도로명 주소 표기: 역전길 50
- (안 제5조) 운영시간 단순화
 - ① 반려동물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② <삭제>
 - ③ 반려동물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매주 월요일
- (안 제6조) 이용료 세부 규정 마련 위해 [별표 1]을 별지로 수정
: 이용료 규정을 시설별로 구분하고, 동종업종의 평균 시세에 공공성을 반영한 이용료를 산입하며, 조문에 이미 반영된 감정기준 [별표 2]를 삭제
 - ① 반려동물문화센터의 반려동물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동일 업종 시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라 사람과 반려동물로 구분하여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5.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개 정 안: 별첨

4. 관련법령: 「동물보호법」 제2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5.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4. 2. 15. ~ 3. 7.) 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4. 1. 22.(가족보육과-2337호)
- 예산부서 심의필: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2024. 1. 30.(예산실-1297호)
- 법제부서 공고필: 2023. 2. 14.(순천시 공고 제2024-420호)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조제1의3호”를 “제2조제7호”로 한다.

제3조 중 “조곡동 131-5번지”를 “역전길 50”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① 반려동물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로 한다.

① 반려동물문화센터의 반려동물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동일 업종 시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라 사람과 반려동물로 구분하여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용료 · 수강료(제6조 관련)

1. 이용료

구분	내용	대상	금액(원)	비고
반려동물 시설	놀이실	사 랑	2,000	1명
		반려동물	3,000	1두
	애견샤워실	중·소형견	8,000	체고 40cm 미만 체중 12kg 미만
		대 형 견	10,000	체고 40cm 이상 체중 12kg 이상

2. 수강료

강좌명	기준	수강료(원)	비고
정규과정	1회	5,000	
체험학습	1회	10,000	

[별표 3]

이용료 반환 기준(제7조 관련)

1. 반려동물문화센터의 사정에 따라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전액 환불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경우: 전액 환불
3. 그 밖의 이용료 등의 환불 기준

가. 이용료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전	이용료 전액 환불
	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	환급 없음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	이용료 전액 환불 및 이용료의 10% 배상

나. 체험학습비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체험시작 전 취소	체험학습비 전액 환불
	체험시작 후 취소	환급 없음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체험 취소 또는 연기	체험학습비 전액 환불 및 체험학습비의 10% 배상
	체험 30분 이상 지연	체험학습비의 10% 환불

다. 교육 수강료

1) 강습기간: 1월 이내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교습개시 전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교습개시 후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이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미환급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교습개시 전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교습개시 후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2) 강습기간: 1월 이상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교습개시 전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교습개시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교습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교습개시 전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교습개시 후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의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제2조제7호 ----- -----.
제3조(위치) 순천시가 설치하는 반려동물문화센터(이하“반려동물문화센터”라 한다)는 순천시 조곡동 131-5번지에 둔다.	제3조(위치) ----- ----- ----- 역전길 50-----.
제5조(운영시간 등) ① 반려동물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입장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반려동물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3. (생략) ④ · ⑤ (생략)	제5조(운영시간 등) ① 반려동물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삭 제> ③ ----- -----. 1. -----. <단서 삭제> 2. 3.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이용료 등) ① 반려동물문	제6조(이용료 등) ① 반려동물문

현행	개정안																																																
<u>화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u>	<u>화센터의 반려동물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동일 업종 시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라 사람과 반려동물로 구분하여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u>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u>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u>	② ----- ----- <u>이용료의 100분의 50을 -----</u>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별표 1]	[별표 1]																																																
이 용 료	이용료 · 수강료(제6조 관련)																																																
1. 이용료	1. 이용료																																																
<table><tr><th>구분</th><th>내용</th><th colspan="2">대상</th><th>금액(원)</th><th>비고</th></tr><tr><td rowspan="4">반려동물 동반 고객</td><td rowspan="3">1일 이용</td><td rowspan="2">사람</td><td>1명</td><td>3,000</td><td></td></tr><tr><td>추가 1명당</td><td>2,000</td><td></td></tr><tr><td colspan="2">반려동물</td><td>5,000</td><td>1두</td></tr><tr><td rowspan="2">연간 이용</td><td colspan="2">사람 1명 + 반려동물 1두</td><td>200,000</td><td></td></tr><tr><td colspan="2">1명 또는 1두 추가 시</td><td>50,000</td><td></td></tr></table>	구분	내용	대상		금액(원)	비고	반려동물 동반 고객	1일 이용	사람	1명	3,000		추가 1명당	2,000		반려동물		5,000	1두	연간 이용	사람 1명 + 반려동물 1두		200,000		1명 또는 1두 추가 시		50,000		<table><tr><th>구분</th><th>내용</th><th>대상</th><th>금액(원)</th><th>비고</th></tr><tr><td rowspan="4">반려동물 시설</td><td rowspan="2">놀이실</td><td>사람</td><td>2,000</td><td>1명</td></tr><tr><td>반려동물</td><td>3,000</td><td>1두</td></tr><tr><td rowspan="2">애견 샤워실</td><td>중·소형견</td><td>8,000</td><td>체고 40cm 미만 체중 12kg 미만</td></tr><tr><td>대형견</td><td>10,000</td><td>체고 40cm 이상 체중 12kg 이상</td></tr></table>	구분	내용	대상	금액(원)	비고	반려동물 시설	놀이실	사람	2,000	1명	반려동물	3,000	1두	애견 샤워실	중·소형견	8,000	체고 40cm 미만 체중 12kg 미만	대형견	10,000	체고 40cm 이상 체중 12kg 이상
구분	내용	대상		금액(원)	비고																																												
반려동물 동반 고객	1일 이용	사람	1명	3,000																																													
			추가 1명당	2,000																																													
		반려동물		5,000	1두																																												
	연간 이용	사람 1명 + 반려동물 1두		200,000																																													
1명 또는 1두 추가 시		50,000																																															
구분	내용	대상	금액(원)	비고																																													
반려동물 시설	놀이실	사람	2,000	1명																																													
		반려동물	3,000	1두																																													
	애견 샤워실	중·소형견	8,000	체고 40cm 미만 체중 12kg 미만																																													
		대형견	10,000	체고 40cm 이상 체중 12kg 이상																																													
2. 수강료 · 체험학습비 등 - 교육 대상 · 내용 · 시간 등에 따라 이용료 포함한 금액으로 별도 책정	2. 수강료 <table><tr><th>강좌명</th><th>기준</th><th>수강료(원)</th><th>비고</th></tr><tr><td>정규과정</td><td>1회</td><td>5,000</td><td></td></tr><tr><td>체험학습</td><td>1회</td><td>10,000</td><td></td></tr></table>	강좌명	기준	수강료(원)	비고	정규과정	1회	5,000		체험학습	1회	10,000																																					
강좌명	기준	수강료(원)	비고																																														
정규과정	1회	5,000																																															
체험학습	1회	10,000																																															

현행	개정안																														
[별표 2] 이용료 감경 기준(제6조 관련) <table><tr><th>구분</th><th>내용</th><th>기준</th><th>감경율(%)</th><th>비고</th></tr><tr><td rowspan="2">감경 대상</td><td>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td><td>1명</td><td>50</td><td>관련 증명서 (복지카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여야 함</td></tr><tr><td>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반하는 반려동물</td><td>1두</td><td>50</td><td></td></tr></table>	구분	내용	기준	감경율(%)	비고	감경 대상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50	관련 증명서 (복지카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여야 함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반하는 반려동물	1두	50		<삭 제>																
구분	내용	기준	감경율(%)	비고																											
감경 대상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50	관련 증명서 (복지카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여야 함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반하는 반려동물	1두	50																												
[별표 3] 이용료 반환 기준(제7조 관련) 1. 반려동물문화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전액 환급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경우: 전액 환급 3. 그 밖의 입장료 등의 환급 기준 가. 1일 입장료 <table><tr><th>구분</th><th>환급 기준</th></tr><tr><td rowspan="2">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td><td>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전 입장료 전액 환급</td></tr><tr><td>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 환급 없음</td></tr><tr><td>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td><td>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 입장료 전액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td></tr></table> 나. 연간이용료 <table><tr><th>구분</th><th>환급 기준</th></tr><tr><td rowspan="2">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td><td>결제 후 이용 전 이용료 전액 환급</td></tr><tr><td>결제 후 이용 중 - 총 이용횟수 10회 이하 이용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이용횟수 11회 이상 20회 이하 이용료의 1/2 해당액 환급 - 총 이용횟수 20회 초과 미환급</td></tr><tr><td rowspan="2">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td><td>결제 후 이용 전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10% 배상</td></tr><tr><td>결제 후 이용 중 - 총 이용횟수 10회 이하 이용료의 2/3 해당액 환급 및 해당액의 10% 배상 - 총 이용횟수 11회 이상 20회 이하 이용료의 1/2 해당액 환급 및 해당액의 10% 배상 - 총 이용횟수 20회 초과 이용료의 20% 배상</td></tr></table>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전 입장료 전액 환급	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 환급 없음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 입장료 전액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결제 후 이용 전 이용료 전액 환급	결제 후 이용 중 - 총 이용횟수 10회 이하 이용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이용횟수 11회 이상 20회 이하 이용료의 1/2 해당액 환급 - 총 이용횟수 20회 초과 미환급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결제 후 이용 전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10% 배상	결제 후 이용 중 - 총 이용횟수 10회 이하 이용료의 2/3 해당액 환급 및 해당액의 10% 배상 - 총 이용횟수 11회 이상 20회 이하 이용료의 1/2 해당액 환급 및 해당액의 10% 배상 - 총 이용횟수 20회 초과 이용료의 20% 배상	[별표 3] 이용료 반환 기준(제7조 관련) 1. 반려동물문화센터의 사정에 따라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전액 환급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경우: 전액 환급 3. 그 밖의 이용료 등의 환급 기준 가. 이용료 <table><tr><th>구분</th><th>환급 기준</th></tr><tr><td rowspan="2">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td><td>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전 이용료 전액 환급</td></tr><tr><td>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 환급 없음</td></tr><tr><td>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td><td>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10% 배상</td></tr></table> 나. 체험학습비 <table><tr><th>구분</th><th>환급 기준</th></tr><tr><td rowspan="2">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td><td>체험시작 전 취소 체험학습비 전액 환급</td></tr><tr><td>체험시작 후 취소 환급 없음</td></tr><tr><td rowspan="2">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td><td>체험 취소 또는 연기 체험학습비 전액 환급 및 체험학습비의 10% 배상</td></tr><tr><td>체험 30분 이상 지연 체험학습비의 10% 환급</td></tr></table>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전 이용료 전액 환급	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 환급 없음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10% 배상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체험시작 전 취소 체험학습비 전액 환급	체험시작 후 취소 환급 없음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체험 취소 또는 연기 체험학습비 전액 환급 및 체험학습비의 10% 배상	체험 30분 이상 지연 체험학습비의 10% 환급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전 입장료 전액 환급																														
	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 환급 없음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 입장료 전액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결제 후 이용 전 이용료 전액 환급																														
	결제 후 이용 중 - 총 이용횟수 10회 이하 이용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이용횟수 11회 이상 20회 이하 이용료의 1/2 해당액 환급 - 총 이용횟수 20회 초과 미환급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결제 후 이용 전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10% 배상																														
	결제 후 이용 중 - 총 이용횟수 10회 이하 이용료의 2/3 해당액 환급 및 해당액의 10% 배상 - 총 이용횟수 11회 이상 20회 이하 이용료의 1/2 해당액 환급 및 해당액의 10% 배상 - 총 이용횟수 20회 초과 이용료의 20% 배상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전 이용료 전액 환급																														
	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 환급 없음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10% 배상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체험시작 전 취소 체험학습비 전액 환급																														
	체험시작 후 취소 환급 없음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체험 취소 또는 연기 체험학습비 전액 환급 및 체험학습비의 10% 배상																														
	체험 30분 이상 지연 체험학습비의 10% 환급																														

현행	개정안																														
다. 체험학습비 <table><tr><th>구분</th><th colspan="2">환급 기준</th></tr><tr><td rowspan="2">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td><td>체험시작 전 취소</td><td>체험학습비 전액 환급</td></tr><tr><td>체험시작 후 취소</td><td>환급 없음</td></tr><tr><td rowspan="2">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td><td>체험 취소 또는 연기</td><td>체험학습비 전액 환급 및 체험 학습 비 의 10% 배상</td></tr><tr><td>체험 30분 이상 지연</td><td>체험 학습 비 의 10% 환급</td></tr></table>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체험시작 전 취소	체험학습비 전액 환급	체험시작 후 취소	환급 없음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체험 취소 또는 연기	체험학습비 전액 환급 및 체험 학습 비 의 10% 배상	체험 30분 이상 지연	체험 학습 비 의 10% 환급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체험시작 전 취소	체험학습비 전액 환급																													
	체험시작 후 취소	환급 없음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체험 취소 또는 연기	체험학습비 전액 환급 및 체험 학습 비 의 10% 배상																													
	체험 30분 이상 지연	체험 학습 비 의 10% 환급																													
라. 교육 수강료 1) 강습기간: 1월 이내 <table><tr><th>구분</th><th colspan="2">환급 기준</th></tr><tr><td rowspan="4">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td><td>교습개시 전</td><td>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td></tr><tr><td rowspan="3">교습개시 후</td><td rowspan="3">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td></tr><tr><td>-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td></tr><tr><td>-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td></tr><tr><td rowspan="2">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td><td>교습개시 전</td><td>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td></tr><tr><td>교습개시 후</td><td>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td></tr></table>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교습개시 전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교습개시 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교습개시 전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교습개시 후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다. 정규과정비 1) 강습기간: 1월 이내 <table><tr><th>구분</th><th colspan="2">환급 기준</th></tr><tr><td rowspan="4">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td><td>교습개시 전</td><td>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td></tr><tr><td rowspan="3">교습개시 후</td><td rowspan="3">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td></tr><tr><td>-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td></tr><tr><td>-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td></tr><tr><td rowspan="2">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td><td>교습개시 전</td><td>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td></tr><tr><td>교습개시 후</td><td>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td></tr></table>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교습개시 전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교습개시 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교습개시 전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교습개시 후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교습개시 전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교습개시 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교습개시 전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교습개시 후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교습개시 전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교습개시 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교습개시 전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교습개시 후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2) 강습기간: 1월 이상 <table><tr><th>구분</th><th colspan="2">환급 기준</th></tr><tr><td rowspan="2">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td><td>교습개시 전</td><td>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td></tr><tr><td>교습개시 후</td><td>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교습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td></tr><tr><td rowspan="2">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td><td>교습개시 전</td><td>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td></tr><tr><td>교습개시 후</td><td>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td></tr></table>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교습개시 전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교습개시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교습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교습개시 전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교습개시 후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2) 강습기간: 1월 이상 <table><tr><th>구분</th><th colspan="2">환급 기준</th></tr><tr><td rowspan="2">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td><td>교습개시 전</td><td>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td></tr><tr><td>교습개시 후</td><td>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교습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td></tr><tr><td rowspan="2">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td><td>교습개시 전</td><td>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td></tr><tr><td>교습개시 후</td><td>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td></tr></table>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교습개시 전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교습개시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교습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교습개시 전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교습개시 후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교습개시 전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교습개시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교습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교습개시 전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교습개시 후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교습개시 전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교습개시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교습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교습개시 전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교습개시 후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5. 작성자(참여자)

○ 농업기술센터	동물자원과	과장	조홍균(☎ 8784)
		반려산업팀장	송현중(☎ 4461)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 가. 포유류
 - 나. 조류
 -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2. ~ 6. (생략)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8. ~ 13. (생략)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반려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순천시 순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173호
----------	--------

○ 제출자: 순천시장

○ 제출일: 2024. 4. 4.

1. 개정이유

- 65세 이상 무료 관람대상자 범위를 내국인으로 명확화하고 법령 문구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 “라 함은” → “란”, “이라 함은” → “이란”, “인” → “명”
 - (제4항)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 (안 제6조제1항) “어른” → “성인” 으로 변경
- (별표 1)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 → “7세 이상 12세 이하”
- (별표 3 제4호) 만 나이 및 법률명을 현실에 맞게 변경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65세 이상인 내국인”
- (별표 3 제9호)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3. 개 정 안: 별첨

4. 관련법령: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4. 2. 19. ~ 3. 11.) 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4. 2. 16.(가족복지과-5100호)
- 예산부서 심의필: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2024. 2. 14.(예산실-1892호)
- 법제부서 공고필: 2024. 2. 19.(순천시 공고 제2024-467호)

순천시 순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순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초등학생 및 주민등록상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현역과 전투·의무경찰, 공익요원을 말한다.
4.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5. “단체”란 단체 인솔자에 의하여 유료관람객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소장국가유산”이란 각종 지정 또는 임시지정 국가유산을 말한다.
7. “시설”이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관람시설(성곽, 객사, 동헌, 내아, 옥사, 누각, 전시실 등)과 전시가옥, 재래장터(장옥) 및 장터난전을 비롯한 주차장, 공원 등 그 부대시설과 기타 시설을 말한다.
8. “시설의 사용”이란 제7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영화촬영 등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
9. “사용자”란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6조제1항 중 “어른”을 “성인”으로 한다.

별표 1 중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를 “7세 이상 12세 이하”로 한다.

별표 3 제4호 중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65세 이상인 내국인”으로 하고,
제9호 중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를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관람권란 중 “어른”을 “성인”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어른”란을 각각 “성인”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및 주민등록상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라 함은 하사 이하의 현역과 전투·의무경찰, 공익요원을 말한다. 4.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5. “단체”라 함은 단체 인솔자에 의하여 유료관람객 20인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소장문화재”라 함은 각종 지정 또는 비지정 문화재를 말한다. 7. “시설”이라 함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관람시설(성곽, 객사, 동헌, 내아, 옥사, 누각, 전시실 등)과 전시가옥, 재래장터(장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초등학교 및 주민등록상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현역과 전투·의무경찰, 공익요원을 말한다. 4.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5. “단체”란 단체 인솔자에 의하여 유료관람객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소장국가유산”이란 각종 지정 또는 임시지정 국가유산을 말한다. 7. “시설”이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관람시설(성곽, 객사, 동헌, 내아, 옥사, 누각, 전시실 등)과 전시가옥, 재래장터(장

옥) 및 장터난전을 비롯한 주차장, 공원 등 그 부대시설과 기타 시설을 말한다.

8.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7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영화촬영 등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

9. “사용자”라 함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6조(관람권) ① 관람권은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등의 개인 관람권과 단체 관람권, 자동 및 전산발매 관람권으로 구분하고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 ③ (생략)

[별표 1]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람 요금표(조례 제5조)

구분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4,000원	2,500원	1,500원
단체	3,000원	2,000원	1,000원
순천시민 50% 할인 (단,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 순천시민은 무료로 한다)			

※ 시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율을 정하여 감면할 수 있다.

옥) 및 장터난전을 비롯한 주차장, 공원 등 그 부대시설과 기타 시설을 말한다.

8. “시설의 사용”이란 제7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영화촬영 등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

9. “사용자”란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6조(관람권) ① ----- 성인-----

--.

②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람 요금표(조례 제5조)

구분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4,000원	2,500원	1,500원
단체	3,000원	2,000원	1,000원
순천시민 50% 할인 (단, 7세 이상 12세 이하 순천시민은 무료로 한다)			

※ 시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율을 정하여 감면할 수 있다.

[별표 3]

무료관람 대상자(조례 제9조)

1. ~ 3. (생 략)
4. 만 65세 이상인 사람
5. ~ 8. (생 략)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가. ~ 다. (생 략)
10. ~ 25. (생 략)

[별지 제1호서식]

관 랐 권(개인)(조례 제6조)

(앞 면)

관 랐 권 ○ 일련번호(적색) ○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구분(청색) ○ 관람요금(흑색) ○ 문화재명(흑색)	낙안읍성의 천연색 사진 (문화재 포함)
---	----------------------------------

210mm×70mm이내 (500g/m²)

(뒷 면)

유 의 사 항	낙안읍성의 연혁 (문화재 포함)
----------------	------------------------------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제 호	제 호
단체관람신청서	단체관람영수증	단 체 관 랐 권
신청인 성명, 전 화, 주 소 관 랐 단 체 명 구 분 인 원 관 랐 료 금 액 비 고 어 른 학 생 및 군인 어린이 계 관 랐 소 낙안읍성 민속마을 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천 시 장 귀하	이래와 같이 영수함. 관 랐 단 체 명 구 분 인 원 관 랐 료 금 액 비 고 어 른 학 생 및 군인 어린이 계 관 랐 소 낙안읍성 민속마을 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경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순 천 시 장 인 귀하	관 랐 단 체 명 구 분 인 원 관 랐 료 금 액 비 고 어 른 학 생 및 군인 어린이 계 관 랐 소 낙안읍성 민속마을 년 월 일 순 천 시 장 인

[별표 3]

무료관람 대상자(조례 제9조)

1. ~ 3. (현행과 같음)
4. 65세 이상인 내국인
5. ~ 8. (현행과 같음)
9.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 가. ~ 다. (현행과 같음)
10. ~ 25.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관 랐 권(개인)(조례 제6조)

(앞 면)

관 랐 권 ○ 일련번호(적색) ○ 성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구분(청색) ○ 관람요금(흑색) ○ 문화재명(흑색)	낙안읍성의 천연색 사진 (문화재 포함)
---	----------------------------------

210mm×70mm이내 (500g/m²)

(뒷 면)

유 의 사 항	낙안읍성의 연혁 (문화재 포함)
----------------	------------------------------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제 호	제 호
단체관람신청서	단체관람영수증	단 체 관 랐 권
신청인 성명, 전 화, 주 소 관 랐 단 체 명 구 분 인 원 관 랐 료 금 액 비 고 성 인 학 생 및 군인 어린이 계 관 랐 소 낙안읍성 민속마을 위와 같이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천 시 장 귀하	이래와 같이 영수함. 관 랐 단 체 명 구 분 인 원 관 랐 료 금 액 비 고 성 인 학 생 및 군인 어린이 계 관 랐 소 낙안읍성 민속마을 위와 같이 단체관람료를 경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순 천 시 장 인 귀하	관 랐 단 체 명 구 분 인 원 관 랐 료 금 액 비 고 성 인 학 생 및 군인 어린이 계 관 랐 소 낙안읍성 민속마을 년 월 일 순 천 시 장 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순천시 순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5. 작성자(참여자)

○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소장

손정순(☎ 8835)

관리팀장

이진숙(☎ 8836)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순천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

(최병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4143호
----------	--------

발의연월일 : 2024. 3. 25.

발의자 : 최병배 의원, 강형구 의원
박계수 의원, 나안수 의원
양동진 의원, 김영진 의원
이복남 의원, 김미연 의원
장경순 의원, 장경원 의원
정광현 의원, 이영란 의원
유승현 의원, 이향기 의원
오행숙 의원

1. 제정이유

○ 순천시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및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 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조~ 안 제5조)
- 다. 바다환경 지킴이의 운영 (안 제6조)
- 라. 재정지원 및 지도·감독(안 제7조~ 안 제8조)
- 라. 관련 기관 협력(안 제9조)

3. 제정안: 【붙임 1】

4. 관련법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5. 예산상황: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1】

순천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쓰레기”란 순천시 관할 해안에 버려지거나 해류로 인하여 유입된 각종 폐기물 또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해양 동·식물을 말한다.
2. “바다환경 지킴이”란 순천시 관할 해안에 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 해양 오염행위를 감시하는 등 연안 보호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순천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처리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및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3.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과 유입 최소화 방안
4.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지원
5.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방안
6.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7.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수거·처리 관련 민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 계획
8. 그 밖에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해양쓰레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해안의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종류, 수거·처리 체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바다환경 지킴이) ①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고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바다환경 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바다환경 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바다환경 지킴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2.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시설 및 장비 구입·운영
3.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등 조사·연구
4.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와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관·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 방문 조사 등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자료의 제출 요청이나 방문 조사 등의 지도·감독을 받는 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9조(협력)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의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순천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5. 작성자: 순천시의회의원 최병배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예방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과 국제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바다환경지킴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처리 등을 위하여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방법 및 활동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참고 2

관련법령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강진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5. 7.	해양산림과
2	고성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2. 15.	해양수산과
3	군산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	2023. 2. 1.	항만해양과
4	목포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8. 10.	해양항만과
5	보령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9. 30.	해양정책과
6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해안 가꾸기 조례	2023. 10. 11.	해양수산과
7	부안군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	2023. 10. 13.	해양수산과
8	여수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에 관한 조례	2022. 12. 1.	어업생산과
9	완도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8. 31.	해양정책과
10	울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2019. 12. 26.	해양수산과
11	인천광역시 중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2024. 1. 2.	해양수산과
12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	2022. 2. 24.	
13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2023. 8. 3.	해운항만과
14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	2022. 12. 30.	해양산업과
15	태안군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	2021. 9. 27.	해양산업과
16	통영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5. 21.	해양산업과
17	해남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4. 16.	해양수산과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4145호
----------	--------

발의연월일 : 2024. 3. 26.

발의자 : 김미연 의원, 오행숙 의원
박계수 의원, 나안수 의원
김영진 의원, 강형구 의원
장경순 의원, 양동진 의원
최병배 의원, 정광현 의원
장경원 의원

1. 개정이유

- 조례가 규정하는 가설건축물에 산림사업을 위한 산림경영관리사가 포함이 안 돼 건축물 신고 시 업무 담당자마다 기준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
- 상위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가설건축물에 산림경영관리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범위에 “산림경영관리사” 포함
(안 제18조제2항제5호)

3. 개정안 : [붙임 1]

4. 관련법령

- 「건축법」 제20조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라목, 제18조의3제4항, 별표3의3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5.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붙임 2]

【붙임 1】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서 정하는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함)인 것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가설건축물) ① (생 략)	제18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 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 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 조제2호에서 정하는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산지관 리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 른 산림경영관리사(주거목적 이 아닌 경우에 한함)인 것
<u>5.</u> (생 략)	<u>6.</u> (현행 제5호와 같음)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 해당 없음

4. 미첨부 사유

○ 해당 없음

5. 작성자 : 순천시의회 의원 김미연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치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④ ~ ⑦ (생략)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4. 10. 14.>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준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 ④ (생략)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홍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⑥ ~ ⑩ (생략)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제3호의 임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야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나.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

다.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농약·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및 임산물 전시·판매시설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및 대피소

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 ~ ④ (생략)

④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12. 8. 22., 2018. 10. 30., 2020. 6. 2.>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제18조의3제4항 관련)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경우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가. 산림경영관리사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1) <u>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u> 2) <u>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u>
나.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 농막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	1)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
다. 산림작업인부 대피소 등 산림작업에 필요한 시설(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		
마. 별표 3 제1호 및 제6호의 시설 중 산지일시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농림어업인의 범위) 영 제12조 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제3호의 임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야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
3.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임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6. 4.>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 가설건축물 범위에 “산림경영관리사” 포함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포천시 건축 조례	2024. 2. 21.	건축과
2	속초시 건축 조례	2023. 6. 8.	건축과
3	정선군 건축 조례	2022. 9. 27.	건축과
4	원주시 건축 조례	2023. 5. 19.	건축과
5	철원군 건축 조례	2023. 12. 13.	민원허가실
6	괴산군 건축 조례	2023. 12. 29.	건축행정팀
7	영동군 건축 조례	2023. 10. 5.	도시건축과
8	청주시 건축 조례	2023. 12. 22.	건축디자인과
9	충주시 건축 조례	2023. 11. 24.	건축과
10	당진시 건축 조례	2024. 2. 15.	건축과
11	보령시 건축 조례	2023. 12. 20.	건축허가팀
12	서산시 건축 조례	2023. 12. 20.	원스톱허가과
13	부안군 건축 조례	2022. 12. 9.	민원과
14	순창군 건축 조례	2023. 4. 28.	건축과
15	여수시 건축 조례	2022. 12. 1.	허가과
16	진도군 건축 조례	2023. 12. 20.	민원봉사과
17	해남군 건축 조례	2023. 12. 15.	건축허가과
18	영광군 건축 조례	2023. 10. 6.	종합민원실
19	영암군 건축 조례	2024. 2. 8.	도시디자인과
20	담양군 건축 조례	2023. 12. 22.	도시과
21	성주군 건축 조례	2022. 12. 22.	허가과
22	청도군 건축 조례	2022. 4. 13.	민원과
23	영주시 건축 조례	2023. 12. 21.	건축과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24	김천시 건축 조례	2022. 8. 18.	건축디자인과
25	창원시 건축 조례	2023. 8. 16.	건축경관과
26	진주시 건축 조례	2022. 12. 19.	건축과
27	사천시 건축 조례	2023. 12. 21.	건축과
28	밀양시 건축 조례	2024. 2. 23.	건축과
29	고성군 건축 조례	2023. 8. 8.	건축개발과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4146호
----------	--------

발의연월일 : 2024. 4. 2.

발 의 자 : 김영진 의원

1. 개정이유

- 실질적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지역별 특성도 고려되도록 보다 탄력적인 풍력 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풍력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개정(안 제20조의2제3항)
 - 단서 조항 신설
 - 다만, 2,000m 이내 지역으로서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입지 장소까지의 거리 내 모든 실거주 세대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개정안 : [붙임 1]

4.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5.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붙임 2]

【붙임 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③ 풍력 발전시설은 도로, 5호 이상 주거 밀집 지역, 축사로부터 각각 2,000 m 이내에 입지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2,000m 이내 지역으로서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입지 장소까지의 거리 내 모든 실거주 세대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허가 의 기준) ① ~ ② (생략) ③ 풍력 발전시설은 도로,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축사로부터 각각 2,0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허가 의 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 다만, 2,000m</u> <u>이내 지역으로서 주민 참여형 사</u> <u>업으로 추진하고 입지 장소까지</u> <u>의 거리 내 모든 실거주 세대의</u> <u>동의를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u>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 해당 없음

4. 미첨부 사유

○ 해당 없음

5. 작성자 : 순천시의회 의원 김영진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발행위허가기준 (제56조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u>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u>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 풍력발전시설 “거리제한 기준” 명시

○ 거리제한 기준 명시한 24개 지자체 중, 단서 조항 규정 8개 시군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2023. 10. 31.	도시계획과
2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2022. 10. 17.	도시과
3	곡성군 군계획 조례(단서조항 有)	2023. 12. 27.	민원실
4	구례군 계획 조례	2023. 9. 13.	도시계획팀
5	고흥군 군계획 조례	2023. 4. 4.	건설과
6	보성군 군계획 조례	2023. 6. 30.	도시개발과
7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단서조항 有)	2023. 12. 18.	도시과
8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2022. 12. 30.	건설도시과
9	강진군 군계획 조례(단서조항 有)	2023. 11. 6.	건설과
10	해남군 군계획 조례	2022. 9. 15.	건설도시과
11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2023. 7. 6.	도시디자인과
12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2022. 12. 30.	지역개발과 도시계획팀
13	함평군 군계획 조례	2022. 12. 29.	지역개발과
14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단서조항 有)	2023. 12. 29.	지역개발과
15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2023. 10. 31.	도시재생과
16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2024. 1. 29.	지역개발과
17	진도군 계획 조례(단서조항 有)	2023. 12. 20.	도시개발과
18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단서조항 有)	2023. 12. 29.	신재생에너지과
19	장수군 군계획 조례	2023. 12. 1.	건설교통과
20	영동군 군계획 조례	2024. 3. 25.	도시건축과
21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단서조항 有)	2024. 3. 25.	도시교통과
22	정선군 군계획 조례	2023. 6. 12.	도시계획팀
23	양양군 군계획 조례	2023. 6. 11.	도시계획과
24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단서조항 有)	2023. 6. 2.	도시과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170호
----------	--------

○ 제출자: 순천시장

○ 제출일: 2024. 4. 4.

1. 개정이유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22.1.18.) 및 시행규칙(23.7.20.)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순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현행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9조제1항) 특별교통수단의 종류 참고 법령 개정(현행화)
 -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시행규칙 제6조제3항
- (안 제19조제1항)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의무화(현행화)
 -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개 정 안: 별첨

4. 관련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시행규칙」 제6조

5.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4. 3. 19. ~ 3. 22.)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4. 3. 20.(가족복지과-8833호)
- 예산부서 심의필: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2024. 3. 18.(예산실-3317호)
- 법제부서 공고필: 2024. 3. 19.(순천시 공고 제2024-723호)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u>제6조제2항</u>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② (생략)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 <u>제6조제3항</u>-----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u>설치·운영할 수 있다.</u> 1. ~ 7. (생략) ② ~ ⑦ (생략)	제19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 ----- <u>설치·운영</u> <u>하여야 한다.</u>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5. 작성자(참여자)
 - 도시디자인국 교통정책과 과장 강이구(☎ 5574)
 - 대중교통팀장 김도연(☎ 5907)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는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삭제 <2023. 7. 20.>
3.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순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4172호
----------	--------

- 제출자: 순천시장
- 제출일: 2024. 4. 4.

1. 제정이유

- 2019년부터 4년간 사유림경영활성화를 위하여 「민관 협력형 산림 경영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이
- 2023년 7월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이 법제화됨에 따라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시 필요한 업무 추진 요령과 절차 등을 명시하고
-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를 현장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산림사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안 제3조)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관리업무대행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산림사업의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산림사업의 관리대행자의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 관리대행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 (안 제11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안 제12조) 관리대행자 위법 부당한 행위 제재에 관한 사항

3. 제 정 안: 별첨

4. 관련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5.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4. 2. 16. ~ 3. 7.) 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4. 1. 30.(가족복지과-3249호)
- 예산부서 심의필: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2024. 2. 14.(예산실-1891호)
- 법제부서 공고필: 2024. 2. 16.(순천시 공고 제2024-455호)

순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에 따라 순천시에서 시행하는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산림사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제2항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산림사업을 시행하거나 산림사업을 대행·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치산기술협회
3.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기술인회

제4조(산림사업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등) ①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다.

② 시장은 관리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관리대행자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관리대행자가 대행하는 관리업무
3. 관리업무대행 기간 및 지역

③ 관리대행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협의 확보 및 산림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림사업 발주 등 산림사업 시행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3. 현장조사·감독 등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관리대행자의 선정방법 등) ① 관리대행자를 선정할 때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리적여건 및 사업의 특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다.

제6조(순천시 산림사업 관리대행자 선정 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관리대행자 선정을 위하여 순천시 산림사업 관리대행자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1. 당연직: 산림사업 담당 과장
2. 위촉직
 - 가. 순천시의회 의원
 - 나. 산림사업 관련 전문가

④ 순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계약체결 등) ① 관리업무를 대행할 경우에는 시장과 관리대행자 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되,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③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업무대행의 목적
2. 관리업무대행업자의 의무
3. 대행내용 및 대행기간
4. 그 밖에 관리업무대행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

제8조(관리대행업무) 관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림(造林),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임도사업, 산불예방, 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산림복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5.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보전, 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 복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6.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8.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을 위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의 구조개선,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및 산촌의 진흥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및 수목원의 등록·운영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2.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1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4. 그 밖에 산림자원의 조성·육성·관리 또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9조(관리대행자의 의무) 관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대행자는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별도 팀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2. 관리대행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해 시장이 지시한 업무 외에는 유사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매월 업무진행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사업비 잔액은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시장의 승인 하에 추가 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

제10조(지정 취소 등) 시장은 관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리업무대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업무대행 지정을 받은 경우
2. 시장의 지도, 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산림사업의 관리업무와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 검사를 방해, 거부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 (이하 “수수료”라 한다)을 현저히 증가시켜 청구한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과정에서 재해예방 등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등

제11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관리대행자는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수료(제11조 관련)

사업비	수수료
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5를 곱한 금액
5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2를 곱한 금액
7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82를 곱한 금액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7을 곱한 금액
1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2를 곱한 금액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8을 곱한 금액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1을 곱한 금액
5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24를 곱한 금액
700억원 초과	사업비에 1천분의 22를 곱한 금액

비고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순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제11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 산출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총 비용(a-b)	-18,000,000	-5,000,000	-4,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세입(a)	-	-	-	-	-	-
세출(b)	18,000,000	5,000,000	4,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 수수료는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비에 포함됨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18,000,000	5,000,000	4,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국 비	8,640,000	2,400,000	1,920,000	1,440,000	1,440,000	1,440,000
도 비	2,700,000	750,000	600,000	450,000	450,000	450,000
시 비	6,660,000	1,850,000	1,480,000	1,110,000	1,110,000	1,110,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사업명: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사업
- 사업기간: 2024. ~ 2028.
- 사업주체: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자
- 비용산출 근거: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연차별 소요예산에 따른 수수료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사업비	18,000,000	5,000,000	4,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수수료	1,710,000	475,000	380,000	285,000	285,000	285,000

6. 협의사항: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본 추계결과는 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재정소요액 변경될 수 있음

8. 작성자(참여자)

생태환경센터 산림자원과 과장 김효중(☎ 8743)
 산림조성팀장 김효준(☎ 873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및 협의 등 관리업무를 대행(이하 “관리업무대행”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대행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① (생략)

② 법 제23조의4제1항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산림사업을 시행하거나 산림사업을 대행·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치산기술협회
3.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기술인회

③ (생략)

[본조신설 2023. 6. 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6(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 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본조신설 2023. 7. 26.]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신설 2023. 7. 26.>

수수료의 범위(제25조의6 관련)

사업비	수수료의 범위
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6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5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7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8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8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1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5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9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2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5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25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700억원 초과	사업비에 1천분의 2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비고

1.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의 수수료의 범위는 현지여건 등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비에 1천분의 16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